

정책연구
2017-02

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홍민기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증여의 정의	2
제3절 상속세와 증여세제	4
제2장 기존 연구	6
제1절 서 론	6
제2절 상속자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7
제3절 상속의 영향	14
제4절 상속의 동기	15
제3장 증여상속 통계	19
제1절 노동패널 자료에서의 사적 이전소득	19
제2절 국세통계와 노동패널 자료에서의 상속증여액	21
제3절 연령별 사적 이전소득	23
제4절 증여의 동기	27
제5절 국세자료 상속증여 통계	33

제4장 상속의 비중	39
제1절 서론	39
제2절 자산수익률의 계산	40
제3절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	43
제4절 증여지출을 포함하는 경우	49
제5절 소결	51
제5장 부모의 자산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53
제1절 서론	53
제2절 자료 구성	53
제3절 부모 자산의 영향	57
제4절 소결	65
제6장 결론	66
제1절 요약	66
제2절 시사점	68
참고문헌	71

표 목 차

<표 3- 1> 노동패널 자료의 이전소득 항목	20
<표 3- 2> 노동패널 자료의 사적 이전소득 수입, 상속증여, 이전소득 지출	20
<표 3- 3> 국세통계와 노동패널의 상속증여액 비교	22
<표 3- 4> 2015년 상속증여액 구간별 비교	22
<표 3- 5> 2015년 연령별 이전수입과 이전지출 항목	24
<표 3- 6> 2015년 연령별 이전소득 수지	26
<표 3- 7>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	28
<표 3- 8>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	29
<표 3- 9>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	30
<표 3-10>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	32
<표 3-11> 상속액과 상속세액 통계	34
<표 3-12> 증여액과 증여세액 통계	34
<표 3-13> 상속규모별 상속세 결정 현황(2015년)	36
<표 3-14> 증여규모별 상속세 결정 현황(2015년)	36
<표 3-15> 상속의 자산종류별 분포	37
<표 3-16> 증여의 자산종류별 분포	37
<표 4- 1> 자산수익률	42
<표 4- 2>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	44
<표 4- 3> 가구주 연령 25~35세 가구의 증여상속 비중의 분포 (2015년)	46
<표 4- 4>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증여지출을 포함한 경우)	50
<표 5- 1> 분석 표본과 전체 표본에서 학력별 근로소득	54

<표 5-2> 자산계층의 구분	56
<표 5-3> 자산규모별 부모 가구주의 고용상태 분포	56
<표 5-4> 부모 자산규모별 사교육 비용(2001년)	57
<표 5-5> 부모의 자산규모별 26~34세 자녀의 학력 분포	57
<표 5-6> 부모 자산규모별 26~34세 자녀의 취업상태	59
<표 5-7> 부모 자산규모별 26~34세 자녀의 근로소득, 근속연수, 근로시간	60
<표 5-8> 청년 근로소득의 로그값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2

그림목차

[그림 2-1] 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	14
[그림 3-1] 2015년 가구주 연령별 이전지출	24
[그림 3-2] 2015년 가구주 연령별 이전수입	25
[그림 3-3] 2015년 가구주 연령별 이전수지	26
[그림 4-1] 총자산과 자산수익률의 관계(2015년)	42
[그림 4-2] 연령별 상속자산의 비중(2015년)	45
[그림 4-3] 총자산과 증여상속 자산의 관계 (25~35세 가구주, 2015년)	47
[그림 4-4] 총자산과 증여상속 비중의 관계 (25~35세 가구주, 2015년)	47
[그림 4-5] 연령별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증여지출을 포함한 경우) ...	51
[그림 5-1] 부모의 자산규모별 26~34세 자녀의 학력 분포	58
[그림 5-2] 부모의 자산규모별 26~34세 자녀의 취업상태	60

요 약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대간에 이전되는 방식과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자산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혹은 가구의 자산 형성에 상속과 증여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검토한다. 즉,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자산이 가구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학력, 근로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상속과 증여에 대해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해 권리와 재산을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증여를 계약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 민법에서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고 이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세법에서 증여는 민법의 증여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포괄주의적 정의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경제학 연구에서는 세법상의 증여보다 더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경제학적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를 가장 크게 정의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모든 경제적 도움의 가치와 그 경제적 도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모두를 증여라 할 수 있다. 조금 좁게 정의하면, 부모가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

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의 가치가 증여가 된다.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증여상속이 자산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보완적이다. 상속세만 있다면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있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세금 부과 대상이나 공제범위가 다르다.

2. 기존 연구

상속자산이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자산을 생애주기 자산과 상속자산으로 구분한다. 생애주기 자산은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이고 상속자산은 남의 도움으로 형성한 자산을 말한다. 분해방식에 따라 증여상속의 비중이 달리 계산된다. 증여상속액의 자산 수익까지 고려한 식에 비해, 증여상속의 자산화를 고려하지 않은 식으로 계산하면 증여상속의 비중이 낮아진다.

상속자산이 개인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연구는 크게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1980년대에는 국민계정 자료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시점에서 상속자산의 비중을 계산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국제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비중의 장기 시계열을 구축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세기 동안 U자 형태이다. 즉, 20세기 초반에 상속 비중이 높았다가 1960~80년대 낮았다가 이후 증가하여 21세기 초반까지는 증가 추세이다.

상속의 동기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상속을 의도된 상속과 의도치 않은 상속으로 구분한다. 의도치 않은 상속은 상속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상속의 동기를 분석할 때에는 의도된 상속과 의도치 않은 상속을 구별하

여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과제이다.

3. 증여상속 통계

노동패널 자료에서 사적 이전소득은 사적 이전소득 수입, 상속증여, 사적 이전소득 지출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조사된다. 국세통계에서 2015년 상속액은 10.2조 원, 증여액은 14.7조 원으로 상속증여액은 총 24.9조 원이다. 반면, 2015년 노동패널에서 상속증여액은 4.2조 원이다. 국세통계 대비 노동패널 상속증여액의 비율은 0.169이다. 노동패널에서 포착된 증여상속액이 국세통계에 비해 매우 적다.

고액의 상속증여액이 노동패널 자료와 같은 가구조사 자료에서는 잘 포착되지 않는 반면, 국세통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포착된다. 반면, 국세통계에서는 소액의 사적이전 소득과 상속이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서는 최상위 소득자를 제외한 가구들의 사적 이전소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국세통계에서는 최상위 소득자들의 상속증여액만 파악할 수 있다.

이전소득 수지(수입-지출)는 20대에 흑자이다가 30대부터 60대 초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적자이다. 적자폭은 100만~160만 원 정도이다. 60대 이후에는 흑자이고 흑자폭도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20대와 60~70대 이전소득 흑자폭은 100만~200만 원 수준이다. 80대 이상에서는 400만 원 이상의 흑자를 보인다.

사적 이전의 동기를 보면, 부모는 실제로 매우 이타적인 동기로 자녀에게 사적 이전을 하고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이타적 동기를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 한편 자녀의 이타적 동기는 부모보다는 실제로 약하며, 부모는 자녀의 이타적 동기를 실제보다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국세통계로 보면, 2015년에 10억 원 이상의 증여를 받은 사람은 총 4,143명이다. 10억 원 이상 증여나 상속을 받은 사람은 총 7,591

명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매년 이 정도 증여나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30년 누적 22만 8천 명이다. 한국에서 고액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5%가 되지 않는다.

4. 상속의 비중

이 장에서는 증여상속 자산이 전체 개인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거시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모든 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자산수익률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수익률을 연도별, 가구별로 계산한다. 자산수익률은 가구 총자산을 재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재산소득은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자산소득의 합이다. 재산소득이 있는 가구의 자산수익률은 2001년 평균 11.1%, 2002년 19.6%로 매우 높았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5~7%로 하락하였고, 하락세가 유지되면서 2014년에는 2.7%까지 하락하였다.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산의 투자에 더 많이 신경을 쓰거나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자산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많다고 자산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2001년(4차 자료)부터 2015년(18차 자료)까지의 자료를 이용한다. 가구별로 계산한 자산수익률을 누적적으로 곱하여 누적 자산수익률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가구별 근로소득, 소비, 재산소득, 증여와 상속(이전소득)액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생애주기 자산과 증여자산을 계산한다.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은 2010년 20.5%에서 2011년 20.8%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20.4%로 감소하였다. 노동패널 자료로 계산한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은 약 20.5%라고 할 수 있다.

25~35세 가구주 가운데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않은 가구는 35%를 차지한다. 총자산 가운데 증여상속 비중이 0 초과 25% 미만인 가

구는 50.3%이고, 증여상속의 비중이 25~50%인 경우는 6.1%, 50~75%인 경우는 5.5%, 75% 이상인 경우는 3.1%이다.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이 높은 25~35세 연령에서도 증여상속 자산이 개인 자산의 50%를 넘는 경우는 8.6%에 불과하다.

청년가구의 35%는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다. 청년가구 가운데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이 개인자산의 50%를 넘는 가구는 8.6%이다. 국세통계 자료에서 대규모 증여상속을 받은 청년들을 합하면 약 9% 정도에게는 증여상속이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을 제외한 56.4%의 청년가구에게 증여와 상속은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증여와 상속의 비중은 30대 초반에 매우 높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한다.

5. 부모의 자산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이 장에서는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패널 자료에서 부모와 자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다. 부모의 자산상태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부모의 자산규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사교육 투자, 자녀의 학력수준, 자녀의 고용형태, 자녀의 근로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다.

고자산 가구의 평균 사교육 비용은 무자산 가구의 6.1배가 될 정도로 많다.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학력이 확연하게 높아진다. 자녀가 대졸 이상 비중만 비교해 보면, 고자산 가구의 자녀가 대졸 이상인 비중이 무자산 가구 자녀에 비해 2.7배 높다. 반대로 무자산 가구의 자녀가 고졸 이하인 비중은 고자산 가구에 비해 2.4배 높다. 자산이 많은 가구의 부모는 고학력인데 다가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도 많이 한다.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근로소득이 많은 경향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부모의 자산 차이보다는 적다. 고자산과 무

자산 가구의 자산 차이는 31.6배인 반면, 자녀의 근로소득은 1.2배 차이가 난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임금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청년 임금소득의 로그값이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머지 절반은 직장 탐색기간, 창업자금 지원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6. 결론

현재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수단이 있다.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적으로 세율이 구성되어 있고, 최고세율이 50%에 이르고 있어서 세율 체계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목적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받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세체계에서 과세와 징수를 좀 더 잘해서 편법을 막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

문제는 개인의 상속증여가 아니라 기업의 편법 상속증여이다. 기업소유 집단들은 일감 몰아주기로 몇천억 원, 혹은 몇조 원 정도의 금전적 이득을 보고 있다. 현재의 포괄주의적 과세원칙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 최근 들어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만들고 원칙대로 적용하여 편법적 증여를 막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자산이 많은 자녀들은 상속증여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더 오랫동안 취업준비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소득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하였다. 빨리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도움을 주는 정책에 지나치게 치중하

기보다는 여유 있게 일자리 탐색기간을 가지면서 자신에게 맞는 일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청년이 여유 있게 일자리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충분한 금액의 급여를 오랫동안 지급하되 구직활동과 관련된 지급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앨 필요가 있다.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택마련이다. 현재 청년들에게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강한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마련되면, 상속증여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대간에 이전되는 방식과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자산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혹은 가구의 자산 형성에 상속과 증여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검토한다. 즉,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자산이 가구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의 자산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영향을 파악하는 변수는 자녀의 학력, 근로소득 등이다.

연구를 위해 상속과 증여에 대해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의 정의와 범위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해 권리와 재산을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이어받는 것을 한정하면 재산상속이라고 해야 엄밀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범위는 재산상속이므로 그냥 상속이라고 할 것이다. 법(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하여 상속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일단 간단히 말해, 증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상속과 증여는 다소 겹치는 부분도 있다. 사망 직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으로 볼 것인가 증여로 볼 것인가의 문

제가 있다. 만약 상속으로 본다면 상속 몇 년 전까지의 증여를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증여의 대상은 재산일 수도 있고, 무형의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증여 재산의 범위에는 줄 때의 재산가치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에 늘어난 재산 가치가 포함되기도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상과 범위도 간단하게 정하기 어렵다. 상속에 비해 증여의 정의와 범위는 다소 긴 정리가 필요하다. 증여에 대한 정의는 다음 절에서 한다.

제2절 증여의 정의

민법에서는 증여를 계약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 민법에서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고 이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세법에서 증여는 민법의 증여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

2003년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로 보는 사례를 열거하고, 그 열거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원칙이 제정된 2004년부터는 세법에 예시된 행위 이외에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유찬영·윤영걸, 2011, p.138).

포괄주의적 정의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증여를 받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닌 경우는 모두 포괄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 돈을 빌리는데 담보를 제공해 주는 행위, 재산을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사고파는 행위, 재산이나 돈을 시가보다 저렴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 합병·증자·감자·상장 등 주식을 이용한 부의 이전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유찬영·윤영걸, 2011, p.142),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임야를 구입했는데 그 임야에서 5년 내에 온천수를 개발해 땅값이 30억 원으로 폭등했다고 하자.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 1억 원이고 통상적인 땅값 상승분이 2억 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땅값 30억 원에서 취득가액 2억 원, 개발비용 1억 원, 통상적 토지가격 상승분 2억 원을 제외한 재산가치 상승분 25억 원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게 된다.

포괄주의적 과세원칙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관 대기업 그룹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하지 않고도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자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연스럽게 부가 이전되는 방식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이 3%(중소, 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경제학 연구에서는 세법상의 증여보다 더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은 증여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도움을 어디까지 증여로 볼 것인가이다.

Modigliani(1988)는 재산 이전을 받은 당시의 가치만큼만을 증여상속

4 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으로 보았다. 반면, Kotlikoff and Summers(1981)는 재산 이전을 받은 이후 그 이전 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증여상속액으로 계산하였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즉 자산소득액은 자산액에 자산수익률을 곱한 값이다. 그리고 Kotlikoff and Summers는 18세 이상 부양 자녀에 대한 지출을 증여상속으로 취급한 반면, Modigliani는 증여상속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경제학적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를 가장 크게 정의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모든 경제적 도움의 가치와 그 경제적 도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모두를 증여라 할 수 있다. 조금 좁게 정의하면, 부모가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의 가치가 증여가 된다.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증여상속이 자산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진다.

제3절 상속세와 증여세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보완적이다. 상속세만 있다면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있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세금 부과 대상이나 공제범위가 다르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과세방식으로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오종현·최승문·강성훈(2016), p.28). 유산세 방식은 무상 이전되는 자산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취득자가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한국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자산 전부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실제 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한국 처럼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독일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한국조세연구원, 2012).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상속세액은 상속인 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인이 받은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은 수증인 수의 영향을 받는다. 과세방식만 보면 증여세액보다 상속세액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증여세의 공제범위가 상속세보다 넓어서 상속과 증여 가운데 어떤 것이 세액이 적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2억 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 원 이상이 공제된다. 증여세에서는 배우자가 수증인일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된다. 10년 합산 5,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도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며, 한계세율의 범위는 10~50%이다. 여러 가지 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친다. 2010년대 상속세 실효세율은 평균 15.7%이고, 증여세 실효세율은 평균 22.8%이다(제3장 참조). 특히 2015년에 실효 증여세율은 11.5%로 매우 낮아졌다. 고액 상속증여의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 2015년에 총상속재산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실효세율은 29.0%이고, 증여재산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실효세율은 18.3%이다.

제2장 기존 연구

제1절 서론

이 장에서는 자산의 세대간 이동과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개괄한다. 세대간 이동이라고 할 때에는 소득의 세대간 이동과 자산의 세대간 이동을 포괄한다. 자산의 세대간 이동에 대한 연구에는 자산 형성에서 상속과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연구, 상속과 증여가 자녀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상속과 증여의 동기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도 있고, 증여와 상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속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연구의 처음에 상속과 증여의 의미를 확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체로 증여와 상속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속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Piketty(2011)는 상속(inheritance)을 사망이나 증여(inter vivos gifts)를 통해 얻은 모든 자산의 시장가치로 정의한다. Piketty의 정의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합쳐서 상속이라고 한다. 자산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에서 두 개념의 구분이 중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증여와 상속을 구별하여 사용할 것이지만 때로 ‘상속’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괄하여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산’이라고 하기도 한다. 재산은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것을 말한다. 반면, 자산은 현금, 상품, 건물, 비품, 무형자산, 부채 등과 같이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말한다. 자산은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경영활동이 수반된 개념이다. 엄밀히 재산과 자산을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부채를 어떻게 포함하느냐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물을 말할 때에는 큰 차이가 없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기업의 회계활동이 아니고 개인의 상속과 증여 활동이므로 자산과 재산을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가능하면 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상속자산이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자산을 생애주기 자산과 상속자산으로 구분한다. 생애주기 자산은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이고 상속자산은 남의 도움으로 형성한 자산을 말한다. 생애주기 자산이나 상속자산을 각각 식별(identification)하는 것이 연구의 과제이다.

상속의 동기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상속을 의도된 상속과 의도치 않은 상속으로 구분한다. 의도치 않은 상속은 상속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상속의 동기를 분석할 때에는 의도된 상속과 의도치 않은 상속을 구별하여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과제이다.

제2절 상속자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속자산이 개인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연구는 크게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1980년대에는 국민계정 자료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시점에서 상속자산의 비중을 계산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상속비중의 장기 시계열을 구축하는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1970년대에는 생애주기 모형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하여 상속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모형에서 가정하는 선호, 모형의 파라미터, 소득 과정, 근로시간과 은퇴기간, 가구의 크기 등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현실에 매우 가까운 모형을 만들어야 신뢰성이 높는데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모형을 만들어도 현실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논쟁이 해소되기는 매우 어렵다.

1980년대에는 다른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어,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상속과 생애주기 자산을 계산하고자 하였다. 자산을 상속자산과 생애주기 자산으로 나누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구 연령 t 의 자산 W_t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_t = W_{t-1} + E_t + r_t W_{t-1} - C_t + I_t$$

여기서 E_t 는 근로소득, r_t 는 투자수익률, C_t 는 소비, I_t 는 증여상속과 같은 이전소득을 가리킨다. $r_t W_{t-1}$ 은 재산소득을 의미한다. 즉, 자산은 전기의 자산에 현재기의 저축액을 합한 것이다.

위 식은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_t = \sum_{k=1}^t (E_k - C_k + I_k) \prod_{j=k+1}^t (1 + r_j) \quad (2-1)$$

$S_k = E_k - C_k$, $R_k = \prod_{j=k+1}^t (1 + r_j)$ 라고 하자. R_k 는 누적 투자수익을 가리킨다. 식 (2-1)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항으로 분해할 수 있다.

$$W_t = \sum_{k=1}^t S_k R_k + \sum_{k=1}^t I_k R_k \quad (2-2)$$

첫 번째 항은 생애주기 저축의 합이고 두 번째 항은 증여상속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증여상속은 재산소득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소비는 근로소득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식에서는 매년마다 받은 증여상속액에 매년 자산수익률을 곱한 값을 증여상속액이라고 계산한다.

위 식 (2-1)을 달리 표현하면,

$$W_t = \sum_{k=1}^t (E_k - C_k + r_k W_{k-1}) + \sum_{k=1}^t I_k \quad (2-3)$$

이 식에서 증여상속 자산은 증여상속액의 단순합으로 정의된다. 이 식에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소득도 소비지출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식에서는 자산수익률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받은 증여상속액만을 증여상속액이라고 계산한다.

분해방식에 따라 증여상속의 비중이 달리 계산된다. 증여상속액의 자산수익까지 고려한 식 (2-2)에 비해, 증여상속의 자산화를 고려하지 않은 식 (2-3)으로 계산하면 증여상속의 비중이 낮아진다. 식 (2-3)으로 계산한 비중이 증여상속 비중의 최저한도이다.

Kotlikoff and Summers(1981)는 식 (2-2)를 사용하였다. 증여상속의 자본화를 가정한 것이다. (세후 근로소득 - 소비)의 누적합으로 생애주기 자산을 계산하면 생애주기 자산이 전체 자산의 19%를 차지하고 따라서 증여상속의 비중은 81%라고 하였다.

Modigliani(1988)는 식 (2-3)을 이용하여 증여상속의 비중이 20%라고 계산하였다. Kotlikoff and Summers와 Modigliani는 증여상속의 자본화를 가정하는가에 따라 달랐지만, 다른 요소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Kotlikoff and Summers는 내구재인 주택 지출을 소비로 취급한 반면, Modigliani는 저축으로 취급하였다. Kotlikoff and Summers는 저축을 상대적으로 과소 측정했기 때문이다. Kotlikoff and Summers는 18세 이상 부양 자녀에 대한 지출을 증여상속으로 취급한 반면, Modigliani는 증여상속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Modigliani(1988)와 Hurd and Mundaca

(1989)의 연구결과에서는 상속자산이 20% 미만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들의 연구는 가구조사 자료로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증여상속을 과소추정하였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 이후 연구 논문을 개괄하면서 Blinder(1988)는 방법에 따라 증여상속의 비중이 20~60%라고 하였다. 관련 후속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Wolff(1997)의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증여상속의 비중은 2/3였다. Laitner(1992)는 생애주기 모형을 구축하여 계산하였는데, 상속의 비중은 58~67%였다. Lord and Rangazas(1991)와 Lord(1992)는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상속의 비중을 계산한 결과 50%라고 하였다. Gale and Scholz(1994)는 미국 SCF 자료로 계산하여 상속의 비중이 51%라고 하였다. Davies and Shorrocks(1978)의 연구에서는 상속의 비중이 35~45%라고 보고하였다. 대체로 미국에 대한 연구에서는 증여상속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가 많았다.

캐나다에 대한 연구에서 상속의 비중은 대략 35~53%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Klevmarken(2004)는 스웨덴에서 상속증여가 총재산의 10~19.5%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일본에서 상속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Hayashi(1986)의 연구에서는 9.6%, Dekle(1989)의 연구에서는 3~27%, Campbell(1997)의 연구에서는 23.4~28.1%, Barthold and Ito(1992)의 연구에서는 27.8~41.4%, Horioka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23.9%로 나타났다.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Horioka(2009)의 연구에서는 2006년 일본 가구조사를 이용하여 1,778 가구를 분석한 결과 가구 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였다. 이 가구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가구가 상속을 남길 의사가 없거나, 노후에 답례를 받는 조건으로 상속을 남긴다고 응답하였다. 상속에서 교환의 동기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과 생애주기 자산의 상관관계는 -0.170으로 부자가 상속을 적게 남긴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상속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aragiannaki(2015)는 영국 가구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1985년부터 2005년 시기의 자산분포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 영국에서 주택가격이 상

승하고 중간 자산층의 주택자산이 증가하면서, 영국에서 순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산 불평등이 감소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받은 상속은 이 시기 일어난 자산축적의 10~15%를 차지한다. 상속을 받은 가구만 대상으로 하면 상속은 총자산의 26~30%를 차지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속이 자산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자산 이동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마강래·권오규(2013)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분가한 자녀의 주택자산 및 점유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부모가 자가나 전세인 경우 자녀가 자가, 전세, 월세인 비율이 각각 24%, 63%, 13%인데, 부모가 월세인 경우에는 비율이 각각 9.4%, 43.8%, 46.9%라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가 자가인가 전세인가에 따라서는 자녀의 주택형태가 동일한데, 부모가 월세인 경우에는 자녀주택도 월세인 경우가 매우 높아서, 특히 저소득 저자산에서 대물림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Piketty, Giles, and Rosenthal(2014)은 상속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두 종류의 집단이 있다고 상정한다. 하나는 상속자(혹은 불로소득자, rentier)로서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사람들, 즉 상속자산을 소비하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자수성가자로서 저축을 하여 자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이다. 1872년부터 1927년까지 파리 지역의 부동산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불로소득자는 인구의 10%를 차지하지만 전체 자산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는 상속자의 자본소득이 근로자의 노동소득을 넘어서는 불로소득자의 사회였다.

지금까지 개괄한 연구들과는 달리, Piketty(2011)는 조세자료를 이용하여 1820년부터 2010년까지 상속에 대한 장기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의 장기 추세를 계산하였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여가 없을 때 연간 상속액 B_t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2 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B_t = \frac{w_t^D}{w_t} \frac{P_t^D}{P_t} W_t = \mu_t m_t W_t$$

여기서 Y_t 는 총국민소득, W_t 는 20세 이상 총개인자산을 가리킨다. 그리고 w_t 는 개인평균자산, w_t^D 는 사망자의 평균자산, P_t 는 총인구, P_t^D 는 사망자 수를 가리킨다. 즉, 연간 상속액은 사망자평균자산/개인평균자산 비율(μ_t), 20세 이상 인구의 사망률(m_t), 총개인자산의 곱으로 분해된다.

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 즉 연간 상속액을 총개인자산으로 나눈 값은 다음과 같다.

$$b_{yt} = \frac{B_t}{Y_t} = \mu_t m_t \beta_t \quad (2-4)$$

여기서 β_t 는 총자산/국민소득 비율이다. 예를 들어 $\mu_t=200\%$, $m_t=2\%$, $\beta_t=700\%$ 이면 $b_{yt}=28\%$ 이다.

증여를 고려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다. B_t^{f0} 를 상속액, V_t^{f0} 를 증여액, 이 둘의 비율을 $v_t = V_t^{f0}/B_t^{f0}$ 라고 하면 $B_t^* = B_t(1+v_t)$ 이 성립한다. 이 식을 이용하면 식 (4)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b_{yt} = \mu_t^* m_t \beta_t, \text{ 여기서 } \mu_t^* = (1+v_t) \quad (2-5)$$

식 (2-4)와 (2-5)에서 나타나듯이, 사망자평균자산/개인평균자산 비율(μ_t), 20세 이상 인구의 사망률(m_t), 총자산/국민소득 비율(β_t)을 계산하면 상속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망률과 총자산/국민소득 비율은 인구총조사와 국민계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가장 어려운 것은 μ_t 의 계산이다.

μ_t 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1) 연령-재산 곡선과 (2) 차별 사망률이다. 연령-재산 곡선은 재산세, 부동산세, 상속세 자료나 재산조사 자료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과 사망률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차별사망률은

기존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Piketty(2011)는 부동산세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재산 곡선을 추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791년 프랑스 혁명 이후 토지세를 도입하여 상속과 증여 시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였다. 의무 신고부과에 따라 19세기에도 사망자의 65%가 토지세 신고를 하여서 연령-재산곡선을 추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라 할 수 있다.¹⁾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상속자산량뿐만 아니라 비보고자와 비과세자의 상속자산량, 증여액을 보정하였다. 이때 증여에는 비공식적 현물, 현금 이전, 교육투자 등은 제외된다.

Piketty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상속증여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 상속을 구분한다. 국가 자산 자료, 사망률, 연령-자산 곡선으로 계산한 상속액을 경제적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자료로 계산한 상속액을 재정적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세 자료가 사망자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고, 조세회피가 적어야만 경제적 상속과 재정적 상속은 차이가 적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두 개념의 상속 차이가 적은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2015년 사망자의 약 5%만이 상속세 신고를 하여서 상속세 신고자의 대표성이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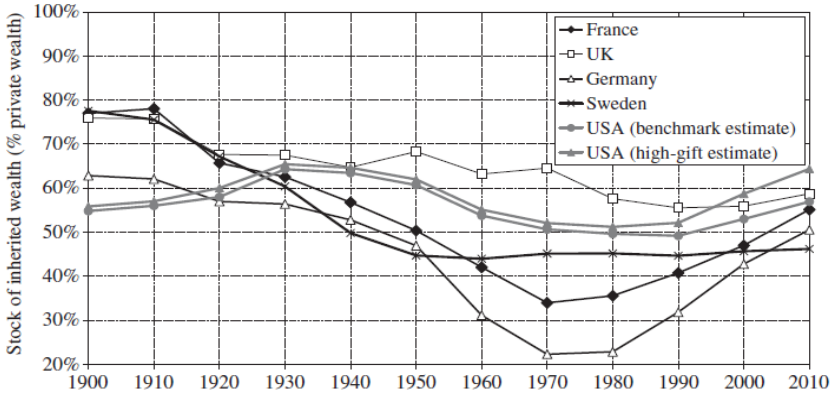
Piketty(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개인총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세기 중반부터 1910년까지 80~90%를 차지하였고, 1920년대부터 비중이 감소하여 1970년대 40~50%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대에는 60~70%에 도달하였다.

영국에서는 20세기 초반 상속의 비중이 75%였다가 조금씩 감소하여 1990년대 57% 정도에 이르렀고, 2010년대에는 약 60%를 차지하였다. 독일에서는 20세기 초반 상속의 비중이 62%였다가 조금씩 감소하였다. 1950년대 이후 많이 감소하여 1970~80년대에는 22%를 차지하였다.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대에 50%까지 증가하였다.

이 세 나라에서의 경향을 보면, 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1)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세 신고자의 대표성이 매우 낮다. 한국에서 상속세 자료로 전 인구의 연령-자산 곡선을 추정할 때에는 다른 자료와 결합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1] 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Alvaredo, Garbinti, and Piketty(2017).

세기 동안 U자 형태이다. 즉, 20세기 초반에 상속 비중이 높았다가 1960~80년대에 낮았다가 이후 증가하여 21세기 초반까지는 증가 추세이다.

제3절 상속의 영향

상속이 자산 불평등을 높이는가? 상속의 양이 많고, 대가 없이 상속을 하고, 부자가 더 많이 상속을 한다면 상속은 자산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Gokhale et al., 2001).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공평 분배를 하거나, 부모가 부자인 자녀끼리 결혼하는 정도, 즉 재산에서 동질적 혼인의 정도가 약하다면, 상속이 재산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결과가 엇갈린다. 상속이 재산 불평등을 높인다는 연구로는 Davies (1982), Gokhale et al.(2001), De Nardi(2004) 등이 있다. 상속이 재산 불평등을 약화시킨다는 연구로는 Laitner(1979), Stiglitz(1969), Becker & Tomes(1979), Tomes(1981) 등이 있다.

상속을 받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을 헤프게 쓴다는 생각을 경제학에서는 ‘카네기의 추측’이라고 한다. 카네기의 추측에 따르면, 상속을 많

이 받으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Holtz-Eakin, Joulfaian, and Rosen(1994)의 연구에서는 1982년 자료를 이용하여 대규모 상속을 받은 자녀는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도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Brown, Coile, and Weisbenner(2010)의 연구에서는 특히 기대치 않은 상속을 받았을 경우 은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반면, Joulfaian and Wilhelm(1994)의 연구에서는 상속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최근 Elinder and Ohlsson(2012)은 스웨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2004년 상속을 받은 사람들의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개인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상속을 받은 사람과 상속을 받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은 사람들만 분석대상이다. 결국 상속의 양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항상소득이론에 따르면, 상속이 예견되었다면 전 생애 동안 소비와 노동공급을 평탄화하는 것이 최적이므로 상속을 전후하여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론에서의 예측과는 달리,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속을 받은 해 혹은 받기 전에는 노동소득 변화가 없었지만, 상속 후 4년 동안 매년 노동소득이 감소하였다. 노동소득의 상속액 탄력성은 -4~-9%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탄력성이 -2~-1%이다. 또한 상속을 받기 전에는 자본소득의 변화가 없었는데, 상속을 받은 직후에는 자본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상속자산을 실현하여 자본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상속으로 자본소득이 단기에 증가하고 노동소득은 감소하였는데 자본소득 증가분이 더 커서, 전체 소득은 증가하였다.

제4절 상속의 동기

상속, 즉 재산이전의 동기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이타심 모형과 교환 모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종현·최승문·강성훈(2016)에

서는 상속의 동기를 좀 더 자세히 구분하여, 자산이전 즉 증여상속의 동기를 우발적 동기, 이타적 동기, 자기만족적 동기, 교환의 동기로 나누고 있다.

우발적(accidental) 상속은 자산 이전의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 때문에 발생하는 상속을 말한다. 자산 이전의 동기가 없더라도 개인은 수명의 불확실성, 소비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산을 축적한다. 자산 이전의 동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을 경우 죽기 전에 자산을 다 소비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남은 생애 동안 소비를 해야 하고 살 집이 있어야 하니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산을 다 소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면 원하지 않는 상속을 하게 된다.

이타적(altruistic) 동기에 의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산을 이전한다. 효용함수로 표현하면 부모의 효용함수에 자녀의 효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부모의 효용은 감소하지만 자녀의 효용은 증가한다. 자산이 많은 부모로부터 자산이 적은 자녀에게 자산이 이전되면 부모와 자녀의 효용합은 증가한다. 얼마나 자산을 이전할 것인가는 부모와 자녀의 효용합이 극대화되는 지점으로 결정된다.

자기만족적 동기(joy-of-giving)에 의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상속을 한다. 이 경우 부모의 효용함수에 자녀의 효용함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효용함수에 자기가 소유한 자산 으로부터 오는 효용과 더불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이 포함된다. 이 두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까지 자산 이전량을 결정한다.

교환(exchange) 혹은 전략적(strategic) 동기에 의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어떤 서비스나 이득을 기대하고 자산을 이전해 준다. 자녀가 부모를 좀 더 자주 방문하거나, 노후에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자녀가 부모를 보살필 것을 기대하면서 상속을 한다.

오종현·최승문·강성훈(2016)은 자산 이전의 동기에 따라 상속 및 증

여세계가 자산 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상속이 우발적 상속 동기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부모는 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세금을 매기든 상속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 자기만족적 동기의 경우에도 상속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기만족적 동기에서는 자녀가 실제 얼마나 받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주려고 하는가만 관심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타적 동기에서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세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상속세율이 높아지면 자녀에게 실제 상속되는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다. 다시 말해 상속의 가격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상속액이 감소한다. 이타적 동기에 의한 상속은 세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공제방식 등에 따라 상속과 증여의 방식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교환의 동기에 의해 상속을 하는 경우에도 세율의 영향을 받는다. 상속세율이 높아지면 자녀가 실제 받는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고 따라서 자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증여상속의 동기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상속의 여러 동기가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증여상속의 동기를 이타심과 교환 동기로 크게 나누어 보면, 증여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교환 동기에 의한 것이며 사망에 의한 상속도 일부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ernheim, Shleifer, and Summers(1985)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이전 가능한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전화 또는 방문 횟수가 많은 반면, 연금과 같이 이전 가능성이 없는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반면, Perozek(1998)의 연구에서는 이전 가능한 자산이 많아도 자녀의 전화 또는 방문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스웨덴에 대한 연구에서 Laitner and Ohlsson(2001)은 부모가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상속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Altonji, Hayashi, Kotlikoff(1997)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소득 이전을 하기는 하지만 그 탄력성이 0.13 정도라고 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더 많이 증여

18 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하고 상속을 위해 저축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해서 증여, 상속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크기가 매우 큰 것은 아니다. 상속의 동기가 이타성이 있지만 전략적인 동기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 3 장 증여상속 통계

이 장에서는 노동패널 자료와 상속 및 증여세 자료에서 증여상속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다. 노동패널에서는 상속증여를 사적 이전소득과 분리하여 응답을 묻고 있다. 세대간 사적 이전 가운데 상속 및 증여세 신고대상이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경제학적 개념에서는 조세의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세대간에 이전되는 모든 가치를 증여로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노동패널 자료에서 사적 이전소득 전체에 대해 살펴본다.

제1절 노동패널 자료에서의 사적 이전소득

노동패널 자료에서 사적 이전소득은 사적 이전소득 수입, 상속증여, 사적 이전소득 지출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조사된다(표 3-1 참조). 이전소득 수입의 세부 항목은 가구주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따로 사는 자녀에게서 받은 현금과 현물, 그 외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액이다. 이전소득 지출의 세부 항목은 가구주 부모에게 준 현금과 현물, 배우자 부모에게 준 현금과 현물,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현금과 현물이다. 노동패널 자료에서 상속증여는 증여와 상속액을 합하여 응답하도록 조사하고 있다.

20 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적 이전소득은 서로 다른 가구 간의 이전소득만을 포함한다. 같이 사는 부모,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가구 내 이전소득으로 가구 간 사적 이전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패널에서 상속과 증여는 가구 간인지 가구 내인지 다소 불명확하지만 가구 간 이전임을 전제로 한다.

노동패널 자료에서 2015년 사적 이전소득 수입은 총 약 31.9조 원, 사적 이전소득 지출은 약 36.1조 원, 상속과 증여는 4.2조 원이다. 가구소득

〈표 3-1〉 노동패널 자료의 이전소득 항목

	세부 항목
이전소득 수입	가구주 부모로부터 현금과 현물액 배우자 부모로부터 현금과 현물액 따로 사는 자녀에게서 받은 현금과 현물액 그 외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보조금
상속증여	상속 및 증여액
이전소득 지출	가구주 부모에게 준 현금과 현물액 + 배우자 부모에게 준 현금과 현물액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현금과 현물액

자료: 필자 작성

〈표 3-2〉 노동패널 자료의 사적 이전소득 수입, 상속증여, 이전소득 지출

(단위: 십억 원)

차수	연도	이전소득 수입 (1)	상속증여 (2)	이전소득 지출	가구총소득 (3)	비중 (%) ((1)+(2))/(3)
12	2009	24,417	4,261	22,988	559,985	5.1
13	2010	26,180	9,394	24,584	632,088	5.6
14	2011	27,833	107	25,318	663,209	4.2
15	2012	27,809	804	26,229	702,596	4.1
16	2013	30,839	1,118	30,705	749,719	4.3
17	2014	33,024	4,723	35,220	797,988	4.7
18	2015	31,907	4,202	36,137	824,095	4.4

주: 통합표본 가중치를 사용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에서 사적 이전소득과 상속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이다. 이 비중은 2010년 5.6%로 높았고, 2012년 4.1%로 낮았다. 사적 이전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은 매우 적다.

노동패널 자료의 표본 구성이 모집단의 구성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적 이전소득 수입과 지출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전소득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전소득 지출액이 더 많다. 표본에서의 가구 구성이 모집단의 구성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된다.

노동패널 자료에서 상속증여액은 연간 변동이 매우 크다. 상속증여액은 2011년 1,070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2010년에는 9조 3,94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노동패널 자료에서 사적 이전소득 대비 상속증여액 비율은 2015년 0.132%이다. 이 비율은 2011년 0.004에서 2010년 0.454까지 차이가 크다.

제2절 국세통계와 노동패널 자료에서의 상속증여액

노동패널 자료에서 상속증여액의 변동이 실제의 변동인지를 가늠하기 위해 노동패널과 국세통계에서 상속증여액을 비교하여 보았다. 국세통계에서 상속증여액은 2009년 19조 6,300억 원이었고, 해가 갈수록 조금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26조 1,610억 원이 되었다. 국세통계에서는 상속증여액의 연간 변동성이 크지 않은 반면, 노동패널 자료에서는 상속증여액의 연간 변동성이 매우 크다.

상속증여액의 연간 변동성에서 노동패널 자료와 국세통계가 차이가 나지만, 상속증여 총액에서도 차이가 난다. 국세통계에서 2015년 상속액은 10.2조 원, 증여액은 14.7조 원으로 상속증여액은 총 24.9조 원이다. 반면, 2015년 노동패널에서 상속증여액은 4.2조 원이다. 국세통계 대비 노동패널 상속증여액의 비율은 0.169이다. 노동패널에서 포착된 상속증여액이 국세통계에 비해 매우 적다.

〈표 3-3〉 국세통계와 노동패널의 상속증여액 비교

(단위: 명, 십억 원)

	국세통계				노동패널	비율 (4)/(3)	
	피상속인 수	상속액 (1)	피증여인 수	증여액 (2)	상속 증여액 (3)= (1)+(2) (4)		
2009	4,340	8,573	96,654	11,056	19,630	4,261	0.217
2010	4,547	7,645	96,623	13,066	20,712	9,394	0.454
2011	5,720	8,879	126,409	16,522	25,401	107	0.004
2012	6,201	9,461	91,331	12,936	22,397	804	0.036
2013	6,275	8,649	109,644	15,657	24,306	1,118	0.046
2014	7,542	10,937	105,533	15,225	26,161	4,723	0.181
2015	6,592	10,184	101,136	14,729	24,913	4,202	0.169

주: 상속액 및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과 다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2015년 노동패널 자료에서 상속증여액이 있다고 답한 가구는 총 7가
 구이며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면 22,101가구에 해당한다. 반면, 2015년 국

〈표 3-4〉 2015년 상속증여액 구간별 비교

(단위: 명, 십억 원)

	노동패널		국세통계		비율	
	가구	상속 증여액	인원	상속 증여액	인원	상속 증여액
1억 이하	12,646	440	59,888	2,372	0.211	0.186
3억 이하	6,750	1,869	26,575	3,507	0.254	0.533
5억 이하	0	0	6,451	1,748	0	0
10억 이하	2,704	1,893	7,223	3,303	0.374	0.573
20억 이하	0	0	4,581	3,842	0	0
30억 이하	0	0	1,487	2,051	0	0
50억 이하	0	0	757	1,724	0	0
50억 초과	0	0	766	6,195	0	0
합 계	22,101	4,202	107,728	24,743	0.205	0.170

자료: 국세청(2015), 『국세통계연보』;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원자료

세통계에서 상속증여액을 보고한 개인은 총 107,728명이다. 국세통계 대비 노동패널의 상속가구 수와 상속증여액의 비율은 각각 20.5%와 17%이다. 국세통계와 비교하여 노동패널에서 포착된 상속증여액은 매우 적다. 국세통계에서는 개인단위이고 노동패널 자료에서는 가구단위여서 국세통계에서 상속과 증여를 보고한 사람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노동패널 자료가 상속증여액을 과소포착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일반적으로 가구조사 자료는 중간소득을 잘 포착하지만 고소득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구간별로 상속증여액을 비교하여 보면 노동패널과 국세통계에서 상속증여액이 다르게 포착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상속증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국세통계에서 47,840명인 데 반해 노동패널 자료에서는 표본에서 2가구이고 가중치를 적용하면 9,454 가구이다. 상속증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노동패널에서 거의 포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쩌다 고액의 상속증여액을 보고하는 가구가 노동패널 자료에 포착되면 그 해의 상속증여액은 다른 해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노동패널 자료에서 연간 상속액의 변동이 심한 이유는 고소득 가구가 가구조사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 경향 때문이다.

고액의 상속증여액이 노동패널 자료와 같은 가구조사 자료에서는 잘 포착되지 않는 반면, 국세통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포착된다. 반면, 국세통계에서는 소득의 사적 이전소득과 상속이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서만 최상위 소득자를 제외한 가구들의 사적 이전소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국세통계에서는 최상위 소득자들의 상속증여액만 파악할 수 있다.

제3절 연령별 사적 이전소득

이 절에서는 사적 이전소득과 지출을 연령별로 살펴본다. 연령은 가구의 연령을 기준으로 5세 간격으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21세부터 25세

24 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까지는 20대 초반으로, 26세부터 30세까지는 20대 후반으로 정하였다.

부모에게 주는 사적 이전지출은 20대 초반 54만 원이고 연령이 증가하

〈표 3-5〉 2015년 연령별 이전수입과 이전지출 항목

(단위: 만 원)

	사적 이전수입			사적 이전지출	
	부모로부터 이전수입	자녀로부터 이전수입	친지로부터 이전수입	부모에게 이전지출	자녀에게 이전지출
20초	208.3	22.9	0.0	53.6	0.3
20후	183.3	0.0	0.0	139.0	0.0
30초	189.9	0.3	0.0	217.0	0.0
30후	118.3	0.1	8.2	253.5	0.2
40초	109.2	0.1	1.1	220.1	3.5
40후	40.8	1.6	3.8	201.5	11.8
50초	40.6	21.2	4.2	150.8	47.7
50후	35.9	42.7	7.8	85.9	94.8
60초	5.7	148.4	4.0	50.3	263.4
60후	2.4	229.0	6.8	21.1	115.2
70초	1.0	276.8	13.0	5.1	192.6
70후	0.0	365.6	13.0	3.3	106.6
80이상	0.1	459.0	20.8	2.8	72.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원자료.

〈그림 3-1〉 2015년 가구주 연령별 이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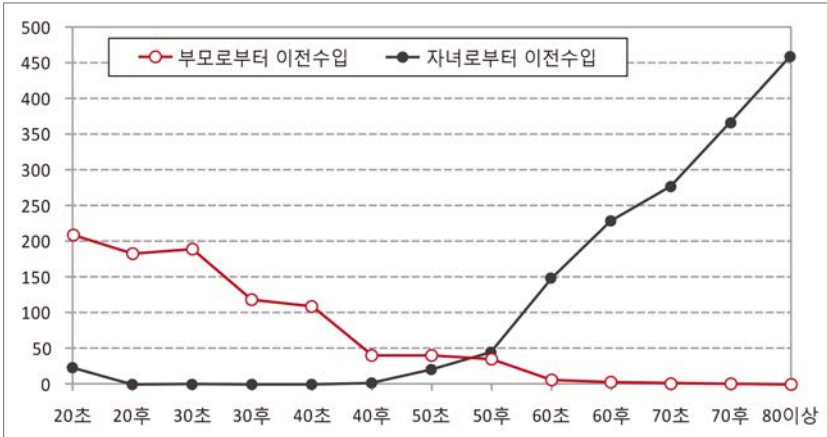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원자료.

(그림 3-2) 2015년 가구주 연령별 이전수입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원자료.

면서 조금씩 증가하여 30대 후반에 254만 원으로 가장 많다. 30대 후반 이후에는 가구주의 연령이 늘어나면서 부모에게 주는 사적 이전지출은 조금씩 감소하여 60대 이후에는 50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

자녀에게 주는 사적 이전지출은 가구주의 연령이 40대일 때까지는 거의 없다가, 5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60대 초반에 263만 원으로 가장 많다. 가구주 연령이 60대 초반이면 자녀의 연령이 30대 초반이나 중반쯤이다. 자녀에게 이전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와 자녀가 혼인 등으로 분가하는 시기가 일치한다.

부모로부터 사적 이전소득 수입은 20~30대에 가장 높다. 20대 초반에 208만 원으로 가장 높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30대 후반에는 118만 원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40대를 넘어서면서 부모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소득은 40만 원 이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자녀로부터 이전소득 수입은 60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후 계속 증가한다. 이전소득 수입과 지출의 연령별 패턴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전소득 수입과 지출액에는 세대효과, 연령효과, 시간효과가 혼합되어 있는데, 연령별 통계에서는 세대효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6〉 2015년 연령별 이전소득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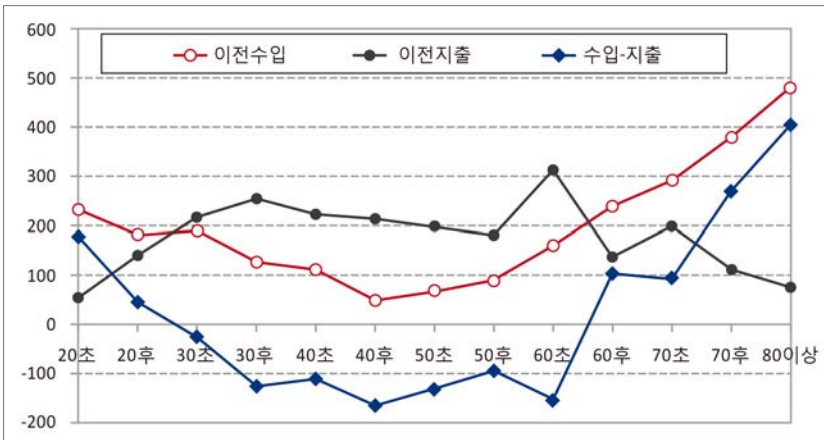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이전수입 총액	이전지출 총액	이전소득 수치
20초	231.2	53.9	177.3
20후	183.3	139.0	44.3
30초	190.3	217.0	-26.8
30후	126.6	253.6	-127.0
40초	110.4	223.5	-113.2
40후	46.3	213.2	-166.9
50초	65.9	198.5	-132.6
50후	86.5	180.7	-94.2
60초	158.1	313.7	-155.6
60후	238.2	136.3	101.9
70초	290.8	197.7	93.1
70후	378.6	109.9	268.7
80이상	479.9	75.0	404.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원자료.

〔그림 3-3〕 2015년 가구주 연령별 이전수지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원자료.

총이전수입은 20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40대 후반에 가장 적다. 5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총이전지출은

30~40대에 가장 높다. 이후 감소하지만 감소폭은 수입에 비해 매우 적다. 30~40대에는 부모에게 많이 지출하고, 50대 이후에는 자녀에게 많이 지출한다.

이전소득 수지(수입-지출)는 20대에 흑자이다가 30대부터 60대 초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적자이다. 적자폭은 100만~160만 원 정도이다. 60대 이후에는 흑자이고 흑자폭도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20대와 60~70대 이전소득 흑자폭은 100만~200만 원 수준이다. 80대 이상에서는 400만 원 이상의 흑자를 보인다.

제4절 증여의 동기

노동패널 자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이유를 묻고 있다. 이 설문들은 사적 이전 혹은 증여의 동기를 묻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와 관련된 설문은 두 가지로, 하나는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이고, 또 하나는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이다. 이 둘을 합쳐서 하나로 정리하였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로는 2015년 통계로 별다른 이유 없음이 52.2%, 혼인, 생일 등 경조사 때 받았다는 것이 32.7%, 생활비 부족이 9.4%를 차지한다. 자녀양육비, 주택구입, 내구재 구입, 사업자금, 부채상환, 의료비 등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는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유 없음’은 2007년 48.5%를 차지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1년에는 59.4%를 차지한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5년에는 52.2%를 차지하였다. 경조사 때 받았다는 응답은 2007년 31.4%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0년에는 17.0%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5년에는

〈표 3-7〉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활비 부족	11.2	10.6	16.3	17.6	14.3	14.6	11.3	11.7	9.4
사업자금	1.1	0.9	1.1	0.8	0.6	0.4	0.9	0.5	0.1
주택구입	2.5	3.0	2.4	2.8	1.9	2.1	1.0	2.0	1.7
혼인, 생일	31.4	21.1	19.4	17.0	19.1	22.1	25.2	25.4	32.7
부채상환	0.6	0.5	0.8	0.0	0.4	0.1	0.4	0.2	0.1
의료비	0.7	0.8	0.5	0.8	0.3	0.8	0.5	0.9	0.4
내구재 구입	1.2	0.6	0.6	1.0	1.2	1.0	0.7	0.6	0.7
자녀양육비	2.3	3.3	2.0	2.2	2.1	2.7	1.6	2.6	2.1
이유 없음	48.5	58.5	55.7	57.1	59.4	55.4	57.8	55.5	52.2
기타	0.5	0.7	1.1	0.8	0.7	0.7	0.6	0.6	0.6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가구주 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를 합한 것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32.7%를 차지하였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2007년 11.2%였다가 2010년 17.6%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2015년 9.4%까지 감소하였다. 금융위기 직후에 ‘생활비 부족’과 ‘이유 없음’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경조사 때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항목별 응답비중이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경기변동이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더구나 위 응답가구가 매년 동일한 가구가 아니어서 위 수치가 실제 사적 이전의 이유 변화 이외에 사적 이전이 일어난 가구 구성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 응답 비중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는 ‘이유 없음’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경조사 때 받았다는 응답도 상당히 많아서 이 둘을 합하면 85%에 이른다. 이유 없이 혹은 경조사 때 받았다는 것은 자녀의 구체적인 필요와는 관계없이 사적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생활비 부족, 주택구입, 내구재 구입, 사업자금, 부채상환, 의료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자녀의 필요에 의해 사적 이전이 발생하는 비중은 낮다.

그러면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5년도 응답에 따르면, 이유 없음이 45.9%이고 혼인이나 생일 등 경조사 때 주었다가 38.4%를 차지하였다. 이 두 개의 응답 비중을 합하면 84.3%를 차지한다. 앞에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와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 생활비 부족, 사업자금, 주택구입, 부채상환 등 자녀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경제적 도움을 준 경우는 15% 정도였다.

연도별로 변화를 보면, 금융위기 직후에 이유 없음과 생활비 부족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경조사 때 주었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추세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와 동일하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이유에 대한 응답이 서로 매우 일관적이다.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이유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사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동기에 대해 묻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사적 이전 혹은 증여를 하는 이유는 전략적인 동기보다는 이타적이거나 자기만족적 동기에서 비롯하고

〈표 3-8〉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활비 부족	11.3	9.4	13.3	10.8	5.9	5.9	7.0	5.9	6.3
사업자금	1.3	1.1	1.5	1.7	0.7	1.5	1.4	0.8	0.5
주택구입	2.1	4.7	3.2	2.5	2.5	1.5	1.7	2.2	2.3
혼인, 생일	32.5	24.5	16.2	21.6	24.3	28.4	31.8	32.8	38.4
부채상환	1.1	0.4	0.3	0.2	0.4	0.4	0.4	0.5	0.6
의료비	0.2	1.6	0.9	0.3	0.5	0.3	0.2	0.4	0.5
내구재 구입	0.2	0.7	0.9	0.3	3.5	2.3	1.6	0.8	1.2
손자양육비	1.5	4.3	3.2	1.9	2.0	2.0	1.8	3.7	2.4
이유 없음	44.3	46.5	53.0	56.8	53.5	51.8	51.4	49.8	45.9
자녀학비	0.0	6.7	0.2	0.2	4.0	3.0	2.3	2.6	1.6
기타	5.4	0.0	7.2	3.8	2.7	2.9	0.3	0.5	0.2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사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사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살펴본다. 노동패널 자료에는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와 관련된 설문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구주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배우자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이다. 이 둘을 합쳐서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를 파악하였다.

2015년 응답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로는 혼인이나 생일 등 경조사 때 준다는 응답이 70.9%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이유 없음이 13.3%를 차지하였다. 이 두 응답을 합하면 84.2%가 된다. 세 번째로 생활비 부족이 12.5%를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경조사 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은 2007년 59.7%였다가 2010년 53.6%까지 감소하였고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15년 70.9%가 되었다. 이유 없이 부모님께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은 2007년 21.2%였다

〈표 3-9〉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활비 부족	16.9	15.1	16.9	16.4	14.8	14.1	12.9	12.4	12.5
사업자금	0.0	0.1	0.0	0.0	0.0	0.0	0.0	0.0	0.0
주택구입	0.0	0.1	0.1	0.1	0.1	0.1	0.1	0.1	0.1
혼인, 생일	59.7	60.2	52.7	53.6	60.8	60.1	63.3	65.6	70.9
부채상환	0.1	0.1	0.1	0.1	0.1	0.1	0.1	0.2	0.1
의료비	1.0	2.4	2.4	2.9	2.8	3.0	2.7	2.6	2.3
내구재 구입	0.0	0.0	0.1	0.1	0.1	0.1	0.1	0.0	0.0
자녀양육비	1.0	1.2	1.7	1.2	1.1	0.8	0.9	1.0	0.9
이유 없음	21.2	20.1	25.9	25.6	20.1	21.4	19.9	18.1	13.3
기타	0.0	0.6	0.1	0.0	0.1	0.2	0.0	0.0	0.0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가구주 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를 합한 것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가 이후 2009년 25.9%까지 증가하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5년 13.3%가 되었다. 경조사 때 사적 이전이 일어난 것과 이유 없이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은 2007년 16.9%였다가 금융위기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12.5%가 되었다.

앞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사적 이전이 일어난 이유를 연도별로 살펴본 바 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이유는 금융위기 직후에 이유 없음과 생활비 부족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경조사 때 주었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낮았다. 여기서는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사적 이전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금융위기 직후에 이유 없음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경조사 때 부모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 이유 없음과 경조사 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의 추세 양상이 동일하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양방향 사적 이전을 보면, 이유 없음이 금융위기 직후에 가장 높았고, 경조사 때 오가는 이전은 금융위기 직후에 가장 낮았다. 생활비가 부족한 이유로 양방향 사적 이전이 오고 갔다는 응답의 비중은 금융위기 때와 직후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변동의 불황기에는 상대적으로 경조사 횟수를 줄일 가능성도 있고, 불황기 때에는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구체적 이전 요구가 적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연도별 변동의 크기는 크지 않아서 추세 변동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이유 없음과 경조사 때 부모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5%를 차지하였다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응답하였을까? 2015년 자료로 보면,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로 혼인이나 생일 등 경조사 때가 56.6%를 차지하였다. 같은 해 자료에서 경조사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 비중 70.9%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29.4%였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 비중 12.5%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세 번째 이유 없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9.6%를 차지하였다. 자녀의 입장에서 이유 없이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 비중

〈표 3-10〉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은 이유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활비 부족	46.3	40.6	40.3	39.4	37.9	33.8	31.4	30.1	29.4
사업자금	0.0	0.1	0.0	0.0	0.0	0.1	0.0	0.1	0.1
주택구입	0.3	0.0	0.1	0.1	0.2	0.1	0.1	0.1	0.1
혼인, 생일	38.6	42.5	38.6	38.4	44.7	47.7	50.8	53.0	56.6
부채상환	0.2	0.1	0.3	0.1	0.1	0.2	0.1	0.2	0.1
의료비	1.9	3.0	2.8	1.6	2.7	1.9	2.4	2.5	2.4
내구재 구입	0.1	0.3	0.1	0.1	0.2	0.4	0.2	0.1	0.3
손자녀양육비	0.9	1.1	1.2	1.9	1.9	1.4	1.3	1.4	1.3
이유 없음	11.7	12.3	16.0	18.4	12.3	13.7	13.6	12.4	9.6
기타	0.1	0.1	0.5	0.0	0.0	0.7	0.0	0.0	0.0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13.3%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다.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사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동일한 경우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응답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녀는 경조사 때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모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는 부모의 특별한 필요 때문에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생일이라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생활비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필요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사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동기와 약간 구분된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사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모나 자녀의 입장에서 모두 이유 없음이 약 46% 정도를 차지하였다. 반면,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사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유 없음이 약 10%를 차지하였다. 이유 없이 준다는 것을 순수하게 이타적 동기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가는 사적 이전에 비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향하는 사적 이전에 이타적 동기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부모와 자녀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적 이전을 하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유 없이 준

다는 생각이 주는 부모보다는 받는 자녀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는 부모를 실제보다 좀 더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사적 이전을 하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유 없이 준다는 생각이 주는 자녀보다 받는 부모에게서 더 낮게 나타난다.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자녀는 이타적으로 주는데 부모는 순전히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는 실제로 매우 이타적인 동기로 자녀에게 사적 이전을 하고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이타적 동기를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 한편 자녀의 이타적 동기는 부모보다는 실제로 약하며, 부모는 자녀의 이타적 동기를 실제보다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제5절 국세자료 상속증여 통계

상속세 자료로부터 구성된 상속액과 상속세액 통계가 나와 있다. 과세 통계에 나타난 피상속인수(상속을 한 사람)는 2015년 6,592명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2015년 총 11조 원이며, 실제 결정된 상속세는 1조 8,440억 원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은 16.7%이다.

피상속인 수는 2009년 4,34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7,542명까지 늘었다가 2015년 약간 감소하였다. 상속세 과세가액도 2014년 11조 9천억 원까지 늘었다가 2015년 약간 감소하였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평균 15.7% 근처에서 약간씩 변동하고 있다.

증여세 자료로부터 구성된 증여액과 증여세액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증여세 결정인원은 2014년 10만 5,533명이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14조 3,38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결정된 세액은 3조 4,880억 원이어서 증여세 실효세율은 24.3%이다.

증여세 결정인원은 2009년 96,654명이었다가 2011년 12만 명을 넘어섰다가 이후에는 1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

〈표 3-11〉 상속액과 상속세액 통계

(단위: 십억 원)

	피상속인수 (명)	상속세 과세가액 (A)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B)	세액비중 (B)/(A)
2009	4,340	9,108	5,337	1,546	0.170
2010	4,547	8,119	4,398	1,222	0.150
2011	5,720	9,553	5,328	1,554	0.163
2012	6,201	10,007	5,680	1,766	0.176
2013	6,275	9,518	5,135	1,363	0.143
2014	7,542	11,935	6,513	1,745	0.146
2015	6,592	11,023	6,136	1,844	0.16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3-12〉 증여액과 증여세액 통계

(단위: 십억 원)

	결정인원 (명)	증여세 과세가액 (A)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B)	세액비중 (B)/(A)
2009	96,654	10,418	12,300	2,037	0.196
2010	96,623	12,394	17,873	2,994	0.242
2011	126,409	15,648	18,870	3,567	0.228
2012	91,331	12,285	15,954	3,235	0.263
2013	109,644	14,886	20,391	4,130	0.277
2014	105,533	14,338	25,206	3,488	0.243
2015	101,136	28,899	25,206	3,314	0.11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가액은 2009년 10조 4,180억 원에서 2011년 15조 6,48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14조 5,000억 원대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2015년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이 28조 9,000억 원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증여세 실효세율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25% 정도에서 조금씩 변동하는 수준이었는데, 2015년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11.5%

로 크게 하락하였다.

2015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로 상속세 결정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상속세 실효세율(결정세액/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다. 상속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29.0%이고, 상속액이 줄어들수록 실효세율은 감소한다. 상속재산이 20억 원 이하이면 실효세율이 5%이며, 상속재산이 3억 원 이하이면 실효세율이 1%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공제 때문에 상속재산이 20억 원 이상이 되어야 실효세율이 10%를 넘어선다.

실제 소규모 상속은 상속세 신고에도 포함되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의 상속이어야 실제로 상속세가 큰 역할을 한다.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넘는 사람은 2015년 354명으로 상속세 피상속인의 5.4%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상속액은 4조 200억 원으로 전체 상속세액의 39.0%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들이 내는 상속세가 총결정세액의 70.9%를 차지한다.

2015년 사망자 수가 275,895명이고 이 중 30세 이상 사망자 수가 270,631명이다. 상속세에 포착된 피상속인 수는 2015년 6,59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44%를 차지하며, 20억 원 이상을 상속한 피상속인은 1,44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53%를 차지한다.

2015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로 증여세 결정 현황이 나와 있다. 증여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실효 증여세율은 5.5%이고, 증여액이 늘어나면서 실효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여 증여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실효세율이 18.6%이다. 증여세 실효세율도 증여액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상속세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적다. 상속세는 상속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고, 증여세는 받는 증여액의 가치에 따라 과세를 하는, 과세 대상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였다.

증여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람은 372명으로 전체 증여세 결정인원의 0.4%를 차지하고, 이들이 받은 증여액은 전체 증여액의 25.2%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들이 낸 증여세액은 전체 증여세액의 36.4%를 차지한다. 과세자료로 보면, 상속액의 분포가 증여액의 분포보다 집중도가 더 높다. 실제 상속과 증여액의 집중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과세 대상의 차

〈표 3-13〉 상속규모별 상속세 결정 현황(2015년)

	피상속인수 (명)	총상속 재산가액 (백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백만원) (1)	총결정 세액 (백만원) (2)	실효세율 (2)/(1)
1억 이하	210	2,484	14,397	141	0.010
3억 이하	1,171	62,476	207,086	2,030	0.010
5억 이하	468	92,822	177,348	2,835	0.016
10억 이하	1,295	761,590	883,348	25,373	0.029
20억 이하	2,006	2,456,213	2,582,470	130,030	0.050
30억 이하	703	1,453,846	1,487,827	156,781	0.105
50억 이하	385	1,207,741	1,236,590	181,922	0.147
50억 초과	354	4,017,974	4,205,552	1,217,781	0.290
전 체	6,592	10,055,146	10,794,618	1,716,893	0.159

자료: 국세청(2015), 『국세통계연보』.

〈표 3-14〉 증여규모별 상속세 결정 현황(2015년)

	결정인원 (명)	증여 재산가액 (백만원)	증여세 과세가액 (백만원) (1)	총결정 세액 (백만원) (2)	실효세율 (2)/(1)
1억 이하	59,678	2,369,467	2,616,907	143,095	0.055
3억 이하	28,070	1,837,822	2,030,270	99,132	0.049
5억 이하	25,404	3,444,991	3,971,670	351,035	0.088
10억 이하	5,983	1,655,618	2,193,120	264,987	0.121
20억 이하	5,928	2,540,937	3,990,488	429,073	0.108
30억 이하	2,575	1,385,648	3,446,544	435,852	0.126
50억 이하	784	597,074	1,873,265	211,432	0.113
50억 초과	372	516,529	1,346,165	250,036	0.186
전 체	101,136	14,687,576	25,979,719	3,279,834	0.126

자료: 국세청(2015), 『국세통계연보』.

이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2015년에 10억 원 이상의 증여를 받은 사람은 총 4,143명이다. 10억 원

이상 증여나 상속을 받은 사람은 총 7,591명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매년 이 정도 증여나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30년 누적 22만 8천 명이다. 한국에서 고액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5%가 되지 않는다.

상속의 자산종류별 분포가 나와 있다. 2010년대 평균값으로 보면, 상속 자산 가운데 토지가 39.6%, 건물이 27.1%, 유가증권이 10.0%, 금융자산이 17.7%, 기타가 5.5%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한 부동산 자

〈표 3-15〉 상속의 자산종류별 분포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
2007	0.407	0.214	0.161	0.165	0.053
2008	0.410	0.272	0.126	0.144	0.048
2009	0.408	0.270	0.105	0.156	0.061
2010	0.429	0.273	0.070	0.170	0.058
2011	0.415	0.280	0.094	0.164	0.046
2012	0.372	0.260	0.101	0.184	0.082
2013	0.397	0.279	0.085	0.190	0.048
2014	0.394	0.263	0.123	0.173	0.047
2015	0.372	0.274	0.126	0.178	0.05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3-16〉 증여의 자산종류별 분포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
2007	0.323	0.290	0.180	0.179	0.027
2008	0.262	0.212	0.312	0.185	0.028
2009	0.313	0.259	0.187	0.203	0.039
2010	0.280	0.245	0.179	0.236	0.060
2011	0.292	0.223	0.204	0.220	0.061
2012	0.273	0.174	0.255	0.223	0.075
2013	0.260	0.160	0.239	0.223	0.118
2014	0.278	0.182	0.200	0.262	0.078
2015	0.254	0.205	0.191	0.291	0.05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산의 비중이 66.8%여서 상속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속에서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후반에는 40% 이상이었고, 특히 2010년에는 42.9%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토지자산의 비중이 감소하여 2015년 37.2%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건물자산의 비중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27% 정도에서 큰 변동이 없다. 토지의 비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유가증권이다. 상속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을 때 유가증권의 비중은 가장 낮고, 반대로 토지의 비중이 낮아질 때 유가증권의 비중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증여의 자산종류별 분포가 나와 있다. 2010년대 평균값으로 보면, 상속 자산 가운데 토지가 27.3%, 건물이 19.8%, 유가증권이 21.1%, 금융자산이 24.3%, 기타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증여에서 토지와 건물을 합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47.1%이고,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을 합한 것의 비중이 45.4%이다. 부동산 관련 자산이 상속에서는 66.8%를 차지한 반면 증여에서는 47.1%를 차지하였다. 상속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훨씬 큰 반면, 증여에서는 주식, 채권, 현금 등 광의의 금융자산의 비중도 부동산 자산 못지않게 크다.

제 4 장 상속의 비중

제1절 서론

이 장에서는 증여상속 자산이 전체 개인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개인의 자산을 증여상속 자산과 자신이 형성한 생애주기 자산으로 구분하는 식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을 E_t , 자산 수익률을 r_t , 소비를 C_t , 증여상속액을 I_t 라고 하면, 연령 t 의 자산 W_t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_t = W_{t-1} + E_t + r_t W_{t-1} - C_t + I_t \quad (4-1)$$

$r_t W_{t-1}$ 은 재산소득이다. 저축액을 $S_k = E_k - C_k$, 누적 자산수익률을 $R_k = \prod_{j=k+1}^t (1 + r_j)$ 라고 하면 위 자산식을 두 개의 자산항목으로 분해하는 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W_t = \sum_{k=1}^t S_k R_k + \sum_{k=1}^t I_k R_k \quad (4-2)$$

이 식의 첫 번째 항은 생애주기 저축의 합이고 두 번째 항은 증여상속

의 합이다. 이 식에서는 증여상속과 재산소득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소비는 근로소득만으로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식에서는 매해 증여상속액에 누적 자산수익률을 곱하여 증여상속 자산을 계산한다. 한편으로 다음의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W_t = \sum_{k=1}^t (E_k - C_k + r_k W_{k-1}) + \sum_{k=1}^t I_k \quad (4-3)$$

이 식에서는 증여상속 자산을 증여상속액의 단순합으로 계산하며 누적 자산수익률은 감안하지 않는다.

제2절 자산수익률의 계산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을 (4-2)나 (4-3) 식으로 계산하려면 먼저 자산수익률을 구해야 한다. 거시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모든 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자산수익률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Kotlikoff and Summers(1981)의 연구에서는 국민계정 자산을 6개 종류로 나누고 각 자산별 수익률을 계산한 후, 가중 평균을 구하여 단일 자산수익률을 계산하였다. 증여상속 자산 비중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국민계정 자산, 소득, 정부지출, 소비 항목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수익률을 연도별, 가구별로 계산한다. 자산수익률은 가구 총자산을 재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재산소득은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자산소득의 합이다. 즉,

$$\text{재산소득} = \text{금융소득} + \text{부동산소득} + \text{자산이득}$$

$$\text{자산수익률} = \text{재산소득} / \text{총자산}$$

재산수익률은 재산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재산소득 가운데 금융소득은 금융자산과 일대일 관계가 있다.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소득이 발생한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부동산소득을 무조건 발생시키지 않는다.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지만 자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이득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자산을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산이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자산이 무조건 재산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대해서 수익률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재산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산도 포함하여 자산수익률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과소 추정된다.

가구별로 계산한 자산수익률의 평균값이 <표 4-1>에 나와 있다. 노동패널 자료에서 재산소득이 0을 초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5~18% 정도이며, 연도별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경기순환과 큰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재산소득이 있는 가구의 자산수익률은 2001년 평균 11.1%, 2002년 19.6%로 매우 높았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5~7%로 하락하였고, 하락세가 유지되면서 2014년에는 2.7%까지 하락하였다. 자산수익률의 추세가 크게 변한 이유를 자산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나, 본 연구의 목적에는 가구별 자산수익률의 계산으로 충분하다.

재산소득이 없는 가구까지 모두 포함하여 자산수익률을 계산하면 0.5%부터 1.5% 사이에 있다. 재산소득이 실제로 있는 가구의 재산소득 수익률에 비하면 6배 이상 낮은 값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부동산 소득과 자산이득은 자산 보유와 일대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산까지 포함하면 자산수익률이 낮게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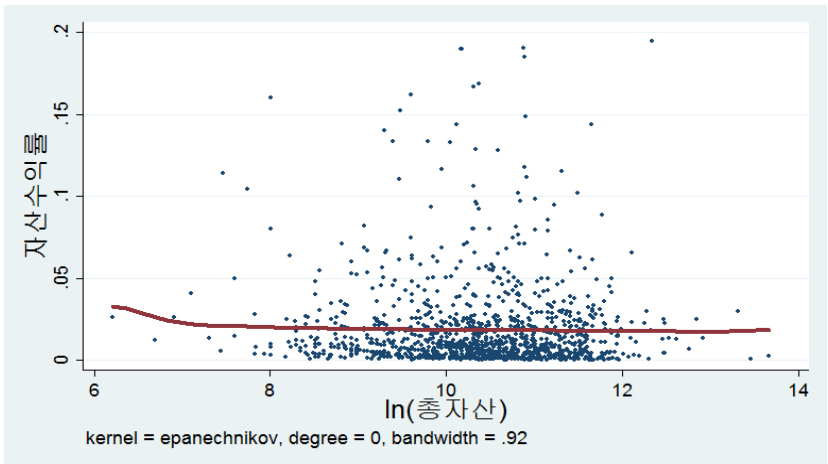
앞에서는 가구 자산수익률의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자산이 많은 가구의 자산수익률이 더 높은가? [그림 4-1]에서는 국지적 다항 평활법(local polynomial smoothing)을 사용하여 2015년 총자산과 자산수익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자산수익률이 0.2 이하인 경우만 보여주고 있다. 자산수익률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총자산과 자산수익률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표 4-1〉 자산수익률

	재산소득 0 포함		재산소득 0 초과		재산소득 0 초과 가구의 비중 (2)/(1)
	표본수 (1)	자산수익률 평균	표본수 (2)	자산수익률 평균	
2001	4244	0.015	584	0.111	0.138
2002	4296	0.030	665	0.196	0.155
2003	4620	0.008	673	0.055	0.146
2004	4845	0.009	656	0.066	0.135
2005	4966	0.010	846	0.056	0.170
2006	5152	0.013	874	0.076	0.170
2007	5251	0.012	950	0.068	0.181
2008	5355	0.007	873	0.042	0.163
2009	7059	0.006	1311	0.031	0.186
2010	7094	0.006	1104	0.042	0.156
2011	7121	0.005	1041	0.035	0.146
2012	7256	0.006	1125	0.038	0.155
2013	7373	0.006	1321	0.034	0.179
2014	7445	0.005	1365	0.027	0.183
2015	7636	0.007	1260	0.041	0.165

주: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한 것임. 자산수익률=재산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자산이득)/총자산.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그림 4-1〉 총자산과 자산수익률의 관계(2015년)



주: 자산수익률 0 초과 0.2 이하를 대상으로 함. 국지적 다항 평활법(local polynomial smoothing)을 사용한 것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원자료.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산의 투자에 더 많이 신경을 쓰거나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자산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많다고 자산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선형회귀 분석에서는 오히려 자산수익률의 자산수준 탄력성이 음수로 나타난다. 그림에서 보여주지 않았지만, 다른 연도에도 총자산과 자산수익률의 관계는 매우 약했다. 재산소득은 거의 총자산량에 선형으로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

증여상속 자산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시작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의 자산 형성이 특정 연령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여 시작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개인의 자산량을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려면 매우 긴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노동패널 자료로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패널자료 가운데 가장 길지만, 이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비해서는 짧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자료가 있는 기간 동안에 형성된 자산 가운데 증여상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2001년(4차 자료)부터 2015년(18차 자료)까지의 자료를 이용한다. 노동패널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에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설문 방식이 2001년 이후 자료와 다르다는 점과 2001년 이후에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응답 결과가 안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구별로 재산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자산이득)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자산수익률을 연도별로 계산한다. 그리고 연도별 자산수익률을 누적적으로 곱하여 누적 자산수익률 R_t 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가구별 근로소득, 소비, 재산소득, 증여와 상속(이전소득)액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식 (4-2)

〈표 4-2〉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

	당해연도		누적합		상속비중(%)
	생애주기 소득 (만 원)	증여상속 소득 (만 원)	생애주기 자산 (만 원)	증여상속 자산 (만 원)	
2010	767.4	193.1	7,089.0	1,450.2	20.5
2011	784.8	184.2	7,873.8	1,634.4	20.8
2012	876.9	175.4	8,750.7	1,809.8	20.7
2013	945.4	179.7	9,696.1	1,989.5	20.5
2014	984.4	213.5	10,680.5	2,203.0	20.6
2015	1,049.5	189.4	11,729.9	2,392.4	20.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로부터 생애주기 자산과 증여자산을 계산한다.

<표 4-2>에서는 증여상속 비중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2010년 생애주기 자산과 증여상속 자산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형성된 가구자산을 누적한 것이다. 2011년 통계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형성된 가구자산을 누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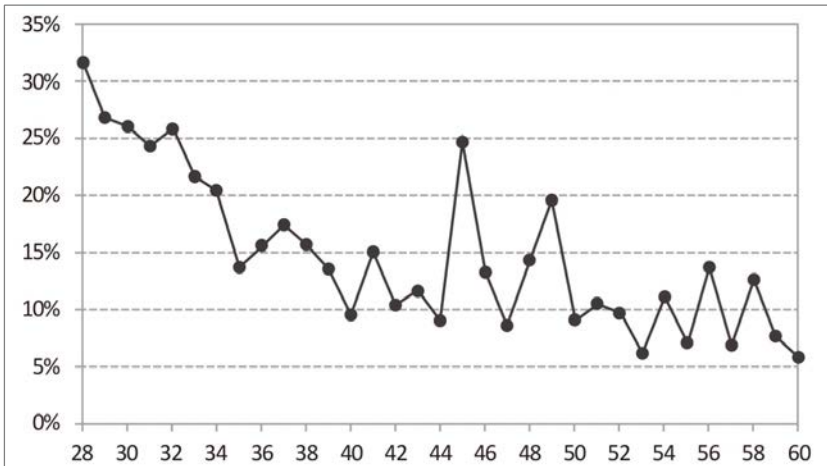
2010년 한 해 증여상속 가구소득은 평균 193.1만 원이고, 생애주기 가구소득은 평균 767.4만 원이다. 2001년까지 형성한 생애주기 가구자산은 평균 7,089만 원이고, 증여상속 자산은 평균 1,450.2만 원이다. 따라서 증여상속 자산이 가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1,450.2/(7,089+1,450.2))이다. 2015년까지 형성된 생애주기 가구자산은 평균 1억 1,730만 원이고 증여상속 자산은 평균 2,392.4만 원으로, 증여상속 자산이 가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이다.

매년 발생하는 증여상속 소득의 증가율은 생애주기 소득의 증가율에 비해 매우 변동폭이 심하다.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생애주기 소득은 연평균 6.5% 증가한 반면, 증여상속 소득은 연평균 0.4%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 비해 2015년에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다. 자산은 소득을 누적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폭은 소득의 변동폭에 비해 적다.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은 2010년 20.5%에서 2011년 20.8%

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20.4%로 감소하였지만 변동폭은 소득 변동에 비해 매우 적다. 노동패널 자료로 계산한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은 약 20.5%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에서는 가구주 연령별로 2015년 총자산 가운데 상속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상속증여 자산의 비중은 20대 후반에 약 30%로 가장 높다. 상속증여 자산의 비중은 30대 초반 23.6%, 30대 후반에 15.2%, 40대 13.6%, 50대 9.4%로 점점 낮아지다가 60대에는 18.4%로 다시 증가한다. 2015년 한 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세대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증여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부분이 크지만, 이후 자기가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임금, 사업소득)에서 저축한 부분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 그리고 60대가 넘어서면 자녀에게 증여를 받는다.

[그림 4-2] 연령별 상속자산의 비중(2015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원자료.

〈표 4-3〉 가구주 연령 25~35세 가구의 증여상속 비중의 분포(2015년)

증여상속 비중 구간	가구수	비중
0	178	0.350
0 초과 25% 이하	256	0.503
25% 초과 50% 이하	31	0.061
50% 초과 75% 이하	28	0.055
75% 초과	16	0.031
전 체	50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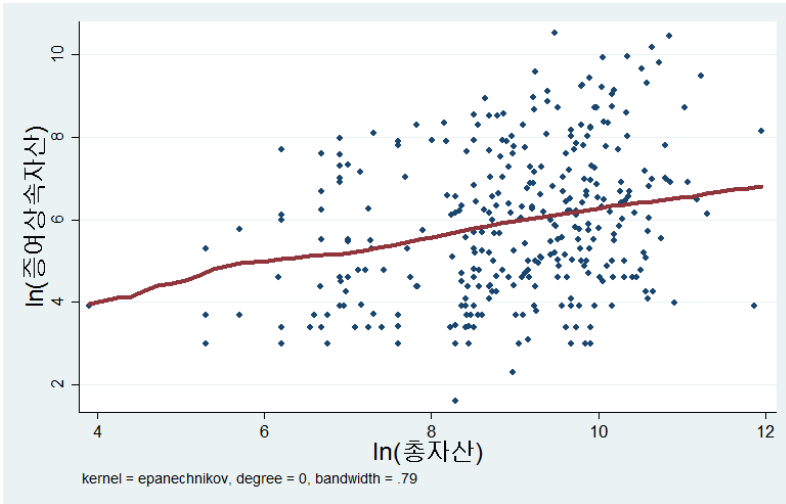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원자료.

앞의 통계는 증여상속 자산 비중의 평균값을 보여준 것이다.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은 가구마다 다를 수 있다. <표 4-3>에서는 2015년 25~35세 가구주의 증여상속 자산 비중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5~35세 가구주 가운데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않은 가구는 35%를 차지한다. 총자산 가운데 증여상속 비중이 0 초과 25% 미만인 가구는 50.3%이고, 증여상속의 비중이 25~50%인 경우는 6.1%, 50~75%인 경우는 5.5%, 75% 이상인 경우는 3.1%이다.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이 높은 25~35세 연령에서도 증여상속 자산이 개인자산의 50%를 넘는 경우는 8.6%에 불과하다.

총자산과 증여상속 자산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림 4-3]이다. 여기서 그림은 2015년 가구주 연령 25~35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가구 총자산이 많을수록 증여상속 자산액도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증여상속 자산액의 총자산 탄력성은 0.054이다. 즉, 총자산이 1% 증가하면 증여상속 자산액은 5.4%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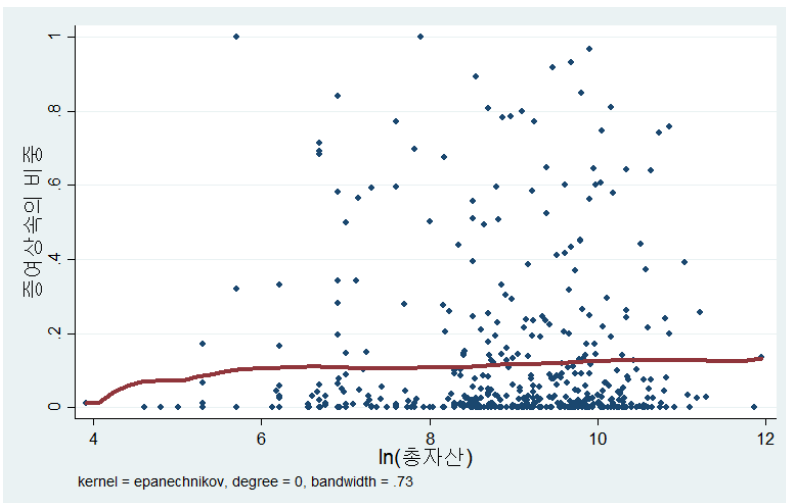
[그림 4-4]에서는 가구 총자산과 증여상속 자산 비중의 관계를 보여준다. 자산이 아주 적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자산과 증여상속 자산 비중의 관계는 매우 평평하다. 자산이 많을수록 증여상속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림 4-3]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산이 많은 가구에서 증여상속 자산의 절대액이 많지만, [그림 4-4]에서 나타난 것처럼 증여상속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량과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다.

(그림 4-3) 총자산과 증여상속 자산의 관계(25~35세 가구주, 2015년)



주: 국지적 다항 평활법(local polynomial smoothing)을 사용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원자료.

(그림 4-4) 총자산과 증여상속 비중의 관계(25~35세 가구주, 2015년)



주: 국지적 다항 평활법(local polynomial smoothing)을 사용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년 원자료.

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증여상속의 양상은 최상위 소득자 혹은 최상위 자산가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을 보면,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청년가구, 주요한 자산 축적의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한 정도로 증여상속을 받는 청년가구, 증여상속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청년가구로 나뉜다. 이들 집단별로 증여상속의 역할이 다르다.

청년가구의 35%는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다. 청년가구 가운데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이 개인자산의 50%를 넘는 가구는 8.6%이다. 국세통계 자료에서 대규모 증여상속을 받은 청년들을 합하면 약 9% 정도에게는 증여상속이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을 제외한 56.4%의 청년가구에게 증여와 상속은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증여와 상속의 비중은 30대 초반에 매우 높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한다.

둘째, 증여상속을 받는 사람들에게 증여와 상속은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한다. 증여와 상속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가구를 형성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큰 역할을 한다. 축적한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마련한다거나 결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 독립적 가구 형성을 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가구의 차입제약(borrowing constraints)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큰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구나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상환기간과 이자지급이 없는 대출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상환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의 증여를 부모 노년기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갚는다. 차입제약이 있고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20~30대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이후 자신이 벌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한 뒤, 40~50대에 지출에 비해 소득이 적은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 생애주기의 관점

에서 보면 세대간 증여는 여유 자산과 부족한 소득을 거래를 통해 균등화하여 생애주기 소비지출을 최대한 균등화하려는 방법이다.

제4절 증여지출을 포함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을 계산할 때 증여와 상속으로 얻는 수입만 고려하였고, 지출은 고려하지 않았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20~30대에는 증여와 상속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지만, 50대 이후에는 자녀와 부모에게 이전 지출이 발생한다. 한 가구의 생애주기 전체로 보면 증여를 통한 수입과 지출이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상속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을 수 있다.

이전소득 수입만 고려하고 있는 자산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W_t = \sum_{k=1}^t (E_k - C_k + I_k) \prod_{j=k+1}^t (1 + r_j) \quad (4-4)$$

여기에 증여지출 G_t 을 포함하면 위 식은 다음과 같다.

$$W_t = \sum_{k=1}^t (E_k - C_k + I_k - G_k) \prod_{j=k+1}^t (1 + r_j) \quad (4-5)$$

이전수입에서 이전지출을 뺀 이전지출 수지액을 $P_k = I_k - G_k$ 라고 하면, 식 (4-6)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W_t = \sum_{k=1}^t S_k R_k + \sum_{k=1}^t P_k R_k \quad (4-6)$$

위 식 (4-6)의 첫 번째 항은 생애주기 자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의 절 계산에서 사용한 항목과 동일하다. 위 식 두 번째 항은 상속증여 순자

<표 4-4>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증여지출을 포함한 경우)

	당해연도		누적합		증여상속 자산비중 (%)
	생애주기 소득 (만 원)	증여상속 순소득 (만 원)	생애주기 자산 (만 원)	증여상속 순자산 (만 원)	
2010	767.4	62.2	7,089.0	131.0	1.8
2011	784.8	52.1	7,873.8	183.0	2.3
2012	876.9	37.8	8,750.7	220.8	2.5
2013	945.4	20.5	9,696.1	241.3	2.5
2014	984.4	42.7	10,680.5	284.0	2.7
2015	1,049.5	19.3	11,729.9	303.3	2.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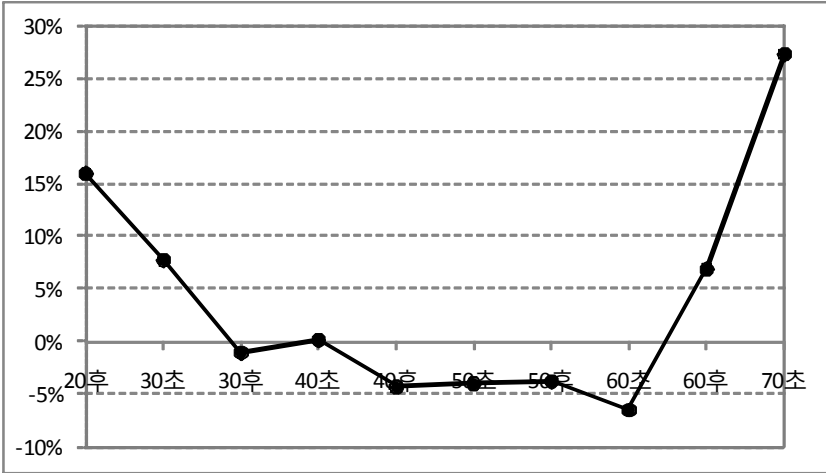
산을 나타낸다. 이전지출의 누적합이 포함되어 있다는 면에서 앞의 절식 (4-3)의 두 번째 항목과 다르다.

상속증여 소득을 순소득=상속증여 소득-증여지출로 하였을 경우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을 계산한 결과가 <표 4-4>에 나와 있다. 증여상속 순소득은 2010년 62.2만 원이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5년에는 19.3만 원에 불과하다. 증여 지출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증여 순소득액은 매우 적다.

2010년에 생애주기 가구자산은 평균 7,089만 원인데, 증여상속 자산은 131만 원으로, 증여상속 자산이 개인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2015년에 생애주기 가구자산은 평균 1억 1,730만 원인데 증여상속 순자산은 303.3만 원이어서,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은 2.6%이다. 상속증여 지출을 포함할 경우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은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약 2.5%이다.

증여 지출을 포함하였을 경우 연령별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을 계산한 결과가 [그림 4-5]에 나와 있다. 증여지출을 포함하였을 경우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은 가구주 연령 20대 후반에 16.0%이고 30대 초반에는 7.8%이다. 30대 후반부터는 증여지출이 증여수입보다 많아서 증여소득

(그림 4-5) 연령별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증여지출을 포함한 경우)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수지가 음수가 된다. 이에 따라 30대 후반부터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은 음이다.

60대 후반이 되면 증여수입이 증여지출보다 많아서 다시 증여상속 자산 비중이 양이 된다. 70대 초반에는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이 27.3%까지 증가한다. 생애주기 초반과 노년기에 증여를 많이 받고, 소득이 높고 자산 형성이 이루어진 생애주기 중반에는 증여를 많이 해서, 생애주기 전체적으로 순증여액은 거의 0에 가깝다.

제5절 소 결

이 장에서는 증여상속 자산이 전체 개인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패널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자산수익률을 연도별, 가구별로 계산하였다. 자산수익률은 2002년 19.6%로 매우 높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2.7%에 이르렀다. 계산 결과 증여

상속 자산의 비중은 2015년 평균 20.4%였다. 2015년 가구주 연령이 25~35세인 가구 가운데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구가 35%를 차지하였고, 증여상속 자산이 가구자산의 50%를 넘는 경우는 8.6%였다. 나머지 56.4%의 가구는 가구자산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증여상속을 받았다. 가구주 연령별 상속자산의 비중을 보면, 20대 후반에 약 30%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증여의 비중은 감소한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증여상속의 역할은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청년가구, 주요한 자산 축적의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한 정도로 증여상속을 받는 청년가구, 증여상속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청년가구에 따라 다르다.

9%의 청년가구들에게는 증여상속이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을 제외한 56.4%의 청년가구에게 증여와 상속은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증여와 상속의 비중은 30대 초반에 매우 높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으로부터 자산을 형성한다. 둘째, 약 9%의 청년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20~30대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약간 받고, 이후 자신이 벌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한 후 40~50대에 자녀나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 증여상속을 주고받는 가구를 거칠게 말해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이들 중산층 가구에 증여는 자산을 균등화하려는 세대간 거래이다.

제 5 장

부모의 자산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제1절 서론

이 장에서는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패널 자료에서 부모와 자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다. 부모의 자산상태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부모의 자산규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사교육 투자, 자녀의 학력수준, 자녀의 고용형태, 자녀의 근로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다.

제2절 자료 구성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여기서는 노동패널 자료에서 부모와 자녀의 자료를 결합한다. 2014년(노동패널 17차 자료)에 26세부터 34세인 자녀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이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정보는 2001년(노동패널 4차 자료) 자료로부터 취한다. 자녀 가운데에는 분가한 자녀도 있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도 있다. 노동패널에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 세대는 647

〈표 5-1〉 분석 표본과 전체 표본에서 학력별 근로소득

(단위: 만 원/월)

	노동패널 17차 26~34세 전체			분석표본 26~34세		
	평균소득	표준편차	분포(%)	평균소득	표준편차	분포(%)
중졸	291.2	367.4	1.2	361.4	502.6	1.5
고졸	210.9	114.9	26.8	213.3	103.0	26.1
전문대졸	233.9	108.2	27.8	241.7	123.9	27.4
대졸	245.0	145.3	39.8	240.3	110.4	39.0
석사 이상	266.7	138.5	4.4	250.4	109.5	6.0
전 체	234.2	133.1	100	236.1	126.6	1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년·2014년 원자료.

세대이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정보가 결합된 분석 표본이 전체 표본과 얼마나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연령대(26~34세)에 대해 학력 분포를 비교하였다.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이상의 분포는 전체 표본에서 1.2%, 26.8%, 27.8%, 39.8%, 4.4%이고, 분석 표본에서는 각각 1.5%, 26.1%, 27.4%, 39.0%, 6.0%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각 학력별로 평균 근로소득을 비교하여 보았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임금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합한 것이다. 고졸, 전문대졸, 대졸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표본에서 각각 210.9만 원, 233.9만 원, 245.0만 원이고, 분석 표본에서는 각각 213.3만 원, 241.7만 원, 240.3만 원으로 두 표본 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다. 다만, 중졸과 석사 이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분석 표본에서 중졸과 석사 이상의 빈도가 매우 적어서 일부 관측치의 값이 평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석의 대상이 되는 26~34세 연령 집단에서 노동패널 전체 표본과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되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결합된 분석 표본 사이에 근로소득과 학력 분포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가 적어도 노동패널 전체 집단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대간 소득 이동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보통 부모의 소득과 자녀

의 소득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소득은 고용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기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부모와 자녀의 소득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해나 두 해의 소득 정보를 이용하면 해당 해의 고용상태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최대한 장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세대간 소득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노동패널 자료로는 10년 동안 부모와 자녀의 소득값을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소득 평균값 대신에 부모의 자산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자산은 과거 동안의 소득 흐름의 결과이므로, 10년 동안 소득 평균값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리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에 따라 가구의 계층을 구분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부모의 향상소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구분기준으로 총자산을 사용할 것인가, 순자산을 사용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있다. 자산과 소득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가 많은 것이 아니어서 순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중산층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부채가 많기도 하다. 따라서 순자산은 소득분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순자산보다는 총자산이 소득분위와 관련성이 더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자산액을 가구 구분 기준으로 사용한다. 총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자가소유 부동산, 전세 임대보증금)과 금융자산을 합한 것이다.

부모 자산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먼저 부모의 가구 총자산에 따라 4개의 가구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로 자녀의 노동시장 지표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총자산이 40분위 미만인 가구를 무자산 집단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집단의 평균 자산은 1,055만 원이다. 저자산 가구는 가구 총자산이 40분위 이상이고 60분위 미만인 가구로서, 평균 총자산은 4,703만 원이다. 중자산 가구는 총자산이 60분위 이상이고 80분위 미만인 가구들이고, 평균 총자산은 1억 1,154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고자산 가구는 총자산이 80분위 이상인 가구들로서 평균 총자산은 3억 3,321만 원이다. 고자산 가구의

〈표 5-2〉 자산계층의 구분

	구분기준	평균 (만 원)	표준편차	빈도
무자산	총자산 40분위 미만	1,054.6	912.6	161
저자산	총자산 40분위 이상 60분위 미만	4,703.2	1,251.0	162
중자산	총자산 60분위 이상 80분위 미만	11,153.6	2,445.1	162
고자산	총자산 80분위 이상	33,321.1	30,620.3	162
전 체		12,575.9	19,819.6	64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년 원자료.

〈표 5-3〉 자산규모별 부모 가구주의 고용상태 분포

(단위: %)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
무자산	27.3	5.6	13.7	24.2	0.6	28.6
저자산	37.7	3.7	12.3	33.3	1.9	11.1
중자산	43.2	2.5	8.0	36.4	2.5	7.4
고자산	35.8	1.9	6.8	43.8	0.6	11.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년 원자료.

평균 총자산은 무자산 가구 총자산의 31.6배이다.

자산규모별 부모 가구주의 고용상태를 <표 5-3>에서 보여주고 있다. 각 자산계층별로 부모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상용근로자인 비중은 무자산 가구 27.3%, 저자산 가구 37.7%, 중자산 가구 43.2%, 고자산 가구 35.8%이다. 중자산 가구까지는 자산이 늘어날수록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고자산 가구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상태가 자영업자인 비중은 무자산 가구 24.2%, 저자산 가구 33.3%, 중자산 가구 36.4%, 고자산 가구 43.8%이다. 고자산 가구에 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저자산과 중자산에서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무자산 가구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미취업 비중이 높다. 무자산 가구가 소득도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3절 부모 자산의 영향

먼저 부모의 자산규모별로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다. 자녀 교육투자에 대한 지표로는 2001년 자녀의 사교육 비용을 사용한다. 이 시기는 분석대상 자녀의 연령이 13~21세일 때이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때의 사교육 투자액으로 자녀 교육투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자산 가구의 사교육 비용은 월 3.8만 원이다.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사교육 비용이 늘어나서, 저자산은 월 6.2만 원, 중자산은 월 11.7만 원, 고자산은 월 23.1만 원의 사교육 비용을 지출하였다. 고자산 가구의 평균 사교육 비용은 무자산 가구의 6.1배가 될 정도로 많다. 자산

〈표 5-4〉 부모 자산규모별 사교육 비용(2001년)

(단위: 만 원/월)

	평균(만 원/월)	표준편차
무자산	3.8	8.9
저자산	6.2	11.7
중자산	11.7	17.8
고자산	23.1	33.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년 원자료.

〈표 5-5〉 부모의 자산규모별 26~34세 자녀의 학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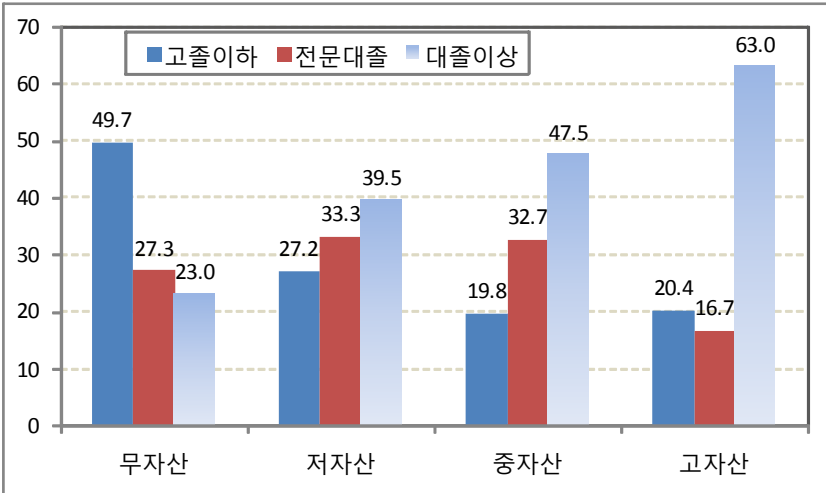
(단위: %)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이상	전체
무자산	0.0	6.2	43.5	27.3	20.5	2.5	100
저자산	1.2	1.9	24.1	33.3	35.8	3.7	100
중자산	0.0	0.0	19.8	32.7	42.6	4.9	100
고자산	0.0	0.6	19.8	16.7	55.6	7.4	1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년 원자료.

(그림 5-1) 부모의 자산규모별 26~34세 자녀의 학력 분포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년 원자료.

이 많을수록 사교육 비용 평균값도 크고 표준편차도 크다. 자산이 많은 가구들 사이에서 사교육 투자의 차이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자산규모에 따라 자녀의 학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다. 2014년 자녀의 학력 분포를 부모의 자산규모별로 계산한 결과가 <표 5-5>와 [그림 5-1]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가 무자산인 경우 자녀의 학력 분포를 보면, 고졸 이하가 49.7%를 차지하고, 전문대졸이 27.3%, 대졸 이상은 23.0%를 차지한다. 부모가 저자산인 경우 자녀의 27.2%가 고졸 이하이고, 33.3%가 전문대졸이고, 39.5%가 대졸 이상이다. 부모가 중자산인 경우 자녀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인 비중은 각각 19.8%, 32.7%, 47.5%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고자산인 경우 자녀의 20.4%가 고졸 이하이고, 16.7%가 전문대졸이며, 63%가 대졸 이상이다.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학력이 확연하게 높아진다. 자녀가 대졸 이상인 비중만 비교해 보면, 고자산 가구의 자녀가 대졸 이상인 비중이 무자산 가구 자녀의 2.7배이다. 반대로 무자산 가구의 자녀가 고졸 이하인 비중은 고자산 가구의 2.4배이다. 자산이 많은 가구의 부모는 고학

력인데 다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도 많이 한다. 이 결과 자녀의 학력수준도 높다. 상식과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부모의 자산규모별로 자녀의 취업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표 5-6>과 [그림 5-2]이다. 취업상태는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였다. 자녀가 정규직 근로자인 비중을 부모 자산규모별로 보면, 무자산 자녀 46.0%, 저자산 자녀 43.8%, 중자산 자녀 55.6%, 고자산 자녀 51.2%이다.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가 정규직 근로자인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선형적이지는 않다.

부모의 경우 중자산 가구의 부모가 상용직인 비중은 43.2%이고, 무자산 가구의 부모가 상용직인 비중은 27.3%여서 1.6배 차이가 난다. 자녀의 경우 중자산 자녀가 정규직인 비중은 무자산 자녀의 1.2배이다. 정규 상용직 근로자가 될 확률로 보면 자녀 세대에서 차이가 적게 난다.

자녀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비중을 자산규모별로 보면 무자산 자녀 16.8%, 저자산 자녀 19.1%, 중자산 자녀 15.4%, 고자산 자녀 13.0%이다. 대체로 보아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 자산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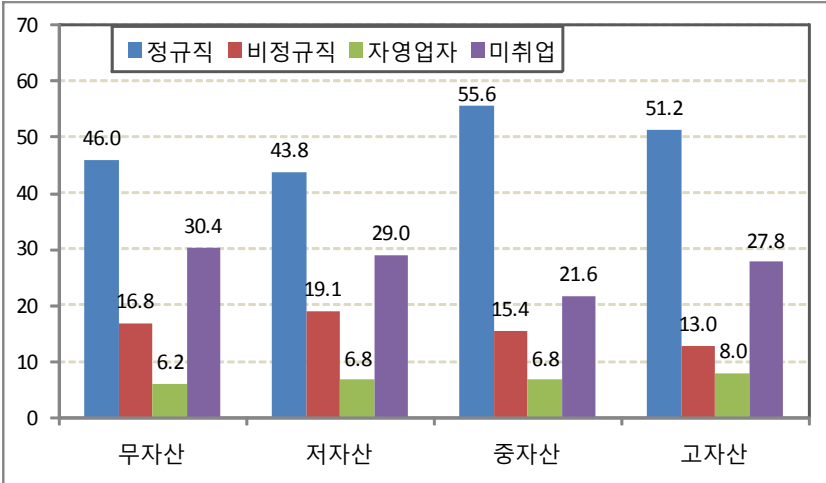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비중을 보면, 고자산 자녀가 자영업자인 비중이 8.0%인데, 무자산 자녀의 경우는 6.2%이다. 부모의 자산이 많으면 사업 자금을 증여받을 수 있어서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

<표 5-6> 부모 자산규모별 26~34세 자녀의 취업상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	무급가족	미취업	전체
무자산	46.0	16.8	6.2	0.6	30.4	100
저자산	43.8	19.1	6.8	1.2	29.0	100
중자산	55.6	15.4	6.8	0.6	21.6	100
고자산	51.2	13.0	8.0	0.0	27.8	1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년 원자료.

[그림 5-2] 부모의 자산규모별 26~34세 자녀의 취업상태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년 원자료.

<표 5-7> 부모 자산규모별 26~34세 자녀의 근로소득, 근속연수, 근로시간

	근로소득 (만 원/월)	정규직 임금 (만 원/월)	근속 (년)	근로시간 (시간/주)
무자산	211.4	213.0	6.0	50.5
저자산	240.8	246.0	7.2	45.9
중자산	235.3	246.7	6.7	47.2
고자산	255.6	257.6	6.6	46.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년 원자료.

문에, 고자산 자녀가 정규직 근로자인 비중이 중자산 자녀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저자산이나 중자산 가구의 자녀들은 교육투자와 학력을 기반으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는 반면, 고자산 자녀들은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것도 목표가 되지만 한편으로 증여받은 사업자금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부모의 자산규모별로 자녀의 근로소득을 비교한 것이 <표 5-7>에 나와 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과 자영업자의 비임

금소득을 합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소득 계산은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부모가 무자산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211.4만 원이다. 저자산 자녀는 240.8만 원, 중자산 자녀는 235.3만 원, 고자산 자녀는 255.6만 원이다.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근로소득이 많은 경향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부모의 자산 차이보다는 적다. 고자산과 무자산 가구의 자산 차이는 31.6배인 반면, 자녀의 근로소득은 1.2배 차이가 난다.

평균 근로소득에는 다양한 고용형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섞여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성이 자산계층에 따라 다르면 실제 소득 차이가 평균 근로소득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만 한정해서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았다. 무자산 자녀 정규직의 임금은 월평균 213만 원이고, 저자산 자녀는 246만 원, 중자산 자녀는 246.7만 원, 고자산 자녀는 257.6만 원이다.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정규직 자녀의 임금이 많은 경향이 있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고자산 정규직 자녀의 임금은 무자산 정규직 자녀의 1.2배이다.

임금에서의 차이가 근로시간에서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자녀의 근로시간을 살펴보았다. 무자산 자녀의 근로시간은 주당 50.5시간이고, 저자산 자녀는 45.9시간, 중자산 자녀는 47.2시간, 고자산 자녀의 경우에는 46.0시간이다. 무자산 자녀는 고자산 자녀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근로를 한다. 근로시간의 차이는 근로소득 차이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으로 살펴보면, 고자산 자녀의 시간당 임금은 무자산 자녀의 시간당 임금의 1.33배이다. 총임금의 차이보다는 많이 나지만, 부모의 자산규모 차이에 비하면 적은 차이이다.

근속연수를 보면, 무자산 자녀는 6.0년, 저자산 자녀는 7.2년, 중자산 자녀는 6.7년, 고자산 자녀는 6.6년으로 자산과 근속연수 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부모의 자산이 적을수록 자녀의 학력이 낮은 경향이 뚜렷하다. 그런데 자녀의 일자리 근속연수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학력이 낮으면 일찍 취업할 수 있어서 근속연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는 그렇지 않다. 학력이 낮으면 취업을 못 하거나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일자리에서 그나마 오래 일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자산 가구의 자녀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취업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임금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청년 임금소득의 로그값이다. 관심변수는 부모의 자산이다. 회귀분석에서 부모 자산 변수는 무자산, 저자산, 중자산, 고자산 더미 변수이다. 무자산이 기준 변수이다.

다른 통제변수가 없는 모형 1은 서술 통계와 유사하다. 무자산에 비해 저자산과 중자산 부모의 자녀는 각각 9.3%, 9.4% 근로소득이 더 많다. 고자산 부모의 자녀는 16.9% 근로소득이 더 많다.

〈표 5-8〉 청년 근로소득의 로그값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가구자산 (기준: 무자산)				
저자산	0.093	0.063	0.050	0.062
중자산	0.094	0.062	0.038	0.060
고자산	0.169*	0.063	0.106	0.063
자녀 나이			0.031*	0.012
자녀 근로시간			0.009*	0.002
자녀 학력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217	0.288
전문대졸			0.332	0.288
대졸			0.359	0.288
석사 이상			0.425	0.298
상수항	5.272	0.045	3.589	0.477
R^2	0.0155			0.1069

주: *는 5%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년 원자료.

두 번째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자녀의 나이, 근로시간, 학력이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포함된다. 회귀분석 결과 자녀의 나이와 근로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 학력에 대한 추정치는 표준오차가 매우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계수값으로 보면 근로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 중졸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이상의 경우 각각 21.7%, 33.2%, 35.9%, 42.5% 근로소득이 더 높다.

나이, 근로시간, 학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 가구 자산이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무자산 가구에 비해 저자산은 5.0%, 중자산은 3.8%, 고자산은 10.6% 더 크다. 통제변수가 없는 모형에서의 추정치에 비해 약 절반 정도 적다.

사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추가적인 통제변수를 포함하는 것은 과잉통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산이 많은 가구에서 성장한 자녀는 교육투자를 더 많이 받았고, 학력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더 높다. 학력은 부모 자산의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이다. 부모 자산이 학력에 영향을 주고 학력이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회귀분석식에 학력을 포함한다는 것은 자녀의 학력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즉 부모 자산이 자녀 학력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제변수에 학력을 포함하면 부모 자산의 효과가 과소추정된다.

여러 통제변수가 포함된 추정식은 부모 자산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이 회귀분석 결과로 부모 자산의 영향을 측정하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통제변수가 포함된 추정식을 통해 부모 자산이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경로를 검토할 수는 있다.

부모의 자산이 청년의 임금에 미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부모 자산 → 자녀 학력 → 취업 → 근로소득의 경로이다. 부모의 자산이 많으면 자녀의 학력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더 많을 수 있다. 이 경로는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주는 경로이다.

두 번째, 부모 자산 → 직장 탐색기간 → 취업 → 근로소득의 경로이

다. 학력이 동일하더라도, 부모의 자산이 많으면 여유 있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여유 있게 취업준비를 하여서 그 결과 소득이 더 높고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 부모의 자산이 거의 없는 자녀는 자기가 스스로 번 근로소득으로 결혼, 주택마련, 생활비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취업준비를 하지 못한 결과 충분히 취업준비를 하였을 때에 비해 소득이 더 낮고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서둘러 취업할 수 있다. 처음 일자리의 특성이 자기의존적 경로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 기간에서의 작은 차이와 최초 일자리 특성에서의 작은 차이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로는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취업준비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경로이다.

앞에서의 통계를 살펴보면, 고자산 가구의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인 비중도 높았지만 미취업인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취업상태인 경우에도 고자산 가구 자녀들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러한 통계는 부모가 고자산인 자녀들이 더 오랫동안 취업준비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소득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세 번째, 부모의 자산 → 창업자금 지원 → 비임금 근로소득의 경로이다. 자녀의 학력이 동일하더라도, 부모의 자산이 많으면 창업자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창업자금이 많을수록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많은 자녀가 자영업자를 하여 더 높은 소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의 통계를 보면, 고자산 가구의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사업을 하는 일이 다른 자산 집단에 비해 용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런 통제변수도 포함하지 않은 회귀모형 1은 여기서 언급된 세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경로를 통해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학력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회귀모형 2는 첫 번째 경로, 즉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 자산이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이다.

회귀모형 1에 비해 회귀모형 2에서 부모 자산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약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절반은 직장 탐색기간, 창업자금 지원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4절 소 결

이 장에서는 노동패널 자료에서 부모와 자녀의 자료를 결합하고, 부모의 가구 자산규모에 따라 4개의 가구집단으로 나누어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고자산 가구의 평균 사교육 비용은 무자산 가구의 6.1배가 될 정도로 많았다. 부모 자산에 따라 자녀의 학력도 큰 차이가 났다. 고자산 가구의 자녀가 대졸 이상인 비중이 무자산 자녀의 2.7배나 되었다. 자녀의 취업상태를 보면,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가 정규직 근로자인 비중도 높고, 자영업자인 비중도 높았다.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근로소득이 많은 경향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부모의 자산 차이보다는 적었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자녀의 학력을 통한 경로, 자녀의 취업준비 기간을 통한 경로, 직접적 사적 이전을 통한 경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임금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직장 탐색기간, 직접적 재산 이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6 장 결 론

제1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대간에 이전되는 방식과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패널 자료와 국세통계에서 상속과 증여액을 비교하였는데, 국세통계 대비 노동패널의 상속가구 수와 상속증여액은 각각 20.5%와 17%였다. 노동패널에서는 고액의 상속증여액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반면, 소액의 사적 이전소득과 상속증여는 잘 포착하고 있다. 반면, 국세통계에서는 소액의 재산 이전은 포착되지 않는 반면 고액의 상속증여는 잘 포착하고 있다. 상속증여 혹은 사적 이전에 대해서는 조사자료와 국세통계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패널로 살펴본 결과, 이전소득 수입에서 이전소득 지출을 뺀 이전소득 수지는 20대에 흑자이다가 30대부터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적자이다. 20대에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60대 이후에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30대부터 60대까지는 자녀나 부모에게 도움을 준다. 경제적 도움을 주는 동기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에게 매우 이타적인 동기로 사적 이전을 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국세통계로 증여와 상속의 양상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 고액의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5% 정

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20~30대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이후 자신이 번 돈으로 재산을 형성하며, 축적된 재산으로 자녀와 부모에게 다시 도움을 준다.

이러한 사실은 제4장에서 증여상속 자산이 개인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계산 결과, 증여상속 자산의 비중은 2015년 20.4%였다. 2015년 가구주 연령이 25~35세인 가구 가운데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청년가구가 35%를 차지하였고, 증여상속 자산이 가구자산의 50%를 넘는 경우는 8.6%였다. 나머지 56.4%의 가구는 가구자산의 약 30% 정도를 증여상속으로 받았다. 가구주 연령별 상속자산의 비중을 보면, 20대 후반에 약 30%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증여의 비중은 감소한다.

증여상속의 역할은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청년가구, 주요한 자산 축적의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한 정도로 증여상속을 받는 청년가구, 증여상속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청년가구에 따라 다르다. 9%의 청년가구들에게는 증여상속이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20~30대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약간 받고, 이후 자신이 번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한 후 40~50대에 자녀나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 증여상속을 주고받는 중산층 가구들에 증여는 자산을 균등화하려는 세대간 거래이다.

제5장에서는 노동패널 자료에서 부모와 자녀의 자료를 결합하고, 부모의 가구 자산규모에 따라 4개의 가구집단으로 나누어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고자산 가구의 평균 사교육 비용은 무자산 가구의 6.1배가 될 정도로 많았다. 부모 자산에 따라 자녀의 학력도 큰 차이가 났다. 고자산 가구의 자녀가 대졸 이상인 비중이 무자산 자녀의 2.7배였다. 자녀의 취업상태를 보면,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가 정규직 근로자인 비중도 높고, 자영업자인 비중도 높았다.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근로소득이 많은 경향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부모의 자산 차이보다는 적었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자녀의 학

력을 통한 경로, 자녀의 취업준비 기간을 통한 경로, 직접적 사적 이전을 통한 경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임금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직장 탐색기간, 직접적 재산 이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절 시사점

상속과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면 자산 불평등이 세대간에 이어지고 기회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로 보면, 상속과 증여가 개인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상속증여 자산의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높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번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35%의 청년세대들은 전혀 증여상속을 받지 않고 있고, 증여상속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56% 정도의 가구들에 상속과 증여는 충분치 않은 소득과 자산을 해결하는 세대간 교환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분히 자산을 형성할 만큼 대규모 상속증여를 받는 사람은 전체 인구에서 약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수단이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회의 평등을 높이고 자산의 불평등을 억제한다는 면에서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적으로 세율이 구성되어 있고, 최고세율이 50%에 이르고 있어서 세율체계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목적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공제 때문에 한계세율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할 수 있지만, 고액의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과세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이 받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세체계에서 과세와 징수를 좀 더 잘해서 편법을 막는 것으로 충분히 보인다.

문제는 개인의 상속증여가 아니라 기업의 편법 상속증여이다. 예를 들어, 기업소유 집단들은 일감 몰아주기로 몇천억 원, 혹은 몇조 원 정도의 금전적 이득을 보고 있다.²⁾ 개인의 증여상속은 많아야 몇십억 원 정도이니 일감 몰아주기에 비할 바가 못된다. 현재의 포괄주의적 과세원칙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 최근 들어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만들고 원칙대로 적용하여 편법적 증여를 막을 필요가 있다.

중소 중견기업이 가업상속지원제도에서 최대 500억 원의 주식이 세금 없이 상속 가능한 것도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가업영위 기간 10년, 15년, 20년 이상에 대해 각각 200억 원, 300억 원, 500억 원을 공제해 주던 것을 10년, 20년, 30년 이상으로 연장하기는 하였지만 공제금액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상영(2017)은 과도한 공제보다는 상속세 연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자산이 적은 자녀들은 교육기회도 상대적으로 적게 얻고 학력도 상대적으로 낮다. 35%의 청년가구들은 상속증여를 전혀 받지 못한다.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부모에게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과 주택구입 등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데, 특히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다.

상속과 증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청년가구들은 교육기회에서도 불평등한 상태에서 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탐색과 경제적 자립과정에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청년기의 충분치 않은 소득과 자산을 보충하는 청년세대들도 성장과 자립에 필요한 도움을 상당부분 부모에게 기대고 있다. 개인적 방식을 보완하거나 대체하여 청년기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지배주주 및 친족주주가 얻은 이익은 2조 740억 원이다.

현재의 청년대책은 대부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자리 탐색 활동을 지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취업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자산이 많은 자녀들은 상속증여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더 오랫동안 취업준비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소득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하였다. 빨리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도움을 주는 정책에 지나치게 치중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일자리 탐색기간을 가지면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여유 있게 일자리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충분한 금액의 급여를 오랫동안 지급하되 구직활동과 관련된 지급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앨 필요가 있다.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택마련이다. 현재 청년들에게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강한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마련되면, 상속증여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2015), 『국세통계연보』.
- 마강래 · 권오규(2013),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주택 연구』 21(2), pp.169~188.
- 오종현 · 최승문 · 강성훈(2016), 『상속 · 증여세제가 세대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유찬영 · 윤영결(2011), 『상속 증여의 기술』, 매일경제신문사.
- 주상영(2017),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사회경제평론』 54, pp.1~36.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원자료.
 _____, 『한국노동패널조사』 해당연도 원자료.
- 한국조세연구원(2012), 『주요국의 상속 · 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세법연구 12-08.
- Altonji, J., F. Hayashi, and L. Kotlikoff(1997), “Parental Altruism and Inter Vivos Transfer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6), pp.1121~1166.
- Alvaredo, F., B. Garbinti, and T. Piketty(2017), “On the Share of Inheritance in Aggregate Wealth: Europe and the USA, 1900-2010,” *Economica* 84, pp.239~260.
- Barthold, T. and Takatoshi Ito(1992), “Bequest Taxes and Accumulation of Household Wealth: U.S.-Japan Comparison,” in T. Ito and A. O. Krueger (eds.), *Political Economy of Tax Refor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235~292.
- Becker, G. and N. Tomes(1979),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6), pp.1153~1189.
- Bernheim, B, A. Shleifer, and L. Summers(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045~1076,
- Blinder, A.(1988), “Comments on Modigliani(chap. 1) and Kotlikoff and Summers(chap. 2),” in D. Kessler, A. Masson(eds.), *Modelling the Accumulation and Distribution of Wealth*,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pp.68~76.
- Brown, J., C. Coile, and S. Weisbenner(2010), “The effect of Inheritance Receipt on Retire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2(2), pp.425~434.
- Campbell, David W.(1997), “Transfer and Life-cycle Wealth in Japan, 1974-1984,” *Japanese Economic Review* 48(4), pp.410~423.
- Davies, J.(1982), “The relative impact of inheritance and other factors on economic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7(3), pp.471~498.
- Davies, J. and A. Shorrocks(1978), “Assessing the quantitative importance of inheritance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Oxford Economic Papers* 30, pp.138~149.
- De Nardi, M.(2004), “Wealth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Links,” *Review of Economic Studies* 71, pp.743~768.
- Dekle, Robert(1989), “The Unimportanc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Japan,” *Japan and the World Economy* 1(4), pp.403~413.
- Elinder, M., O. Erixson, and H. Ohisson(2012), “The Impact of Inheritances on Heirs’ Labor and Capital Income,”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12(1), pp.1935~1682.
- Gale, W. and J. Scholz(1994),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

- pp.145~160.
- Gokhale, J., L. Kotlikoff, J. Sefton, and M. Weale(2001), “Simulating the transmission of wealth inequality via beque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9, pp.93~128.
- Hayashi, Fumio(1986), “Why Is Japan’s Saving Rate So Apparently High?,” in S. Fischer (ed.), *NBER Macroeconomics Annual 1986*, vol. 1, Cambridge, Massachusetts : MIT Press, pp.147~210.
- Holtz-Eakin, D., D. Joulfaian, and H. Rosen(1994), “Entrepreneurial Decisions and Liquidity Constraints,” *RAND Journal of Economics* 25(2), pp.334~347.
- Horioka, C.(2009), “Do bequests increase or decrease wealth inequalities?,” *Economics Letters* 103(1), pp. 23~25.
- Horioka, C., Y. Kouji, N. Masashi, and I. Shiho(2002), “Nihonjin no Isan Douki no Juuyoudo, Seishitsu, Eikyou ni tsuite(On the Importance, Nature, and Impact of the Bequest Motives of the Japanese),” *Yuusei Kenkyuusho Geppou(The Monthly Review of the Institute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Policy)*, No. 163, pp.4~31.
- Hurd, M. and B. Mundaca(1989), “The importance of gifts and inheritances among the affluent,” in R.E. Lipsey and H.S. Tice (eds.), *The Measurement of Saving, Investment and Wealt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pp.737~758.
- Joulfaian, D. and M. Wilhelm(1994), “Estate and Gift Tax Incentives and Inter Vivos Giving,” *National Tax Journal* 57(2), pp.429~444.
- Karagiannaki, E.(2015), “Recent Trends in the Size and the Distribution of Inherited Wealth in the UK,” *Fiscal Studies* 36(2), pp.181~213.
- Klevmarken, A. N.(2004), “On the wealth dynamics of Swedish families, 1984–98,”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0(4), pp.469~491.

- Kotlikoff, L. and L. Summers(1981),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pp.706~732.
- Laitner, J.(1979), "Household bequest behaviour and the national distribution of weal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46(3), pp.467~483.
- _____ (1992), "Random earnings differences, lifetime liquidity constraints, and altruistic intergenerational transfers," *Journal of Economic Theory* 58, pp.135~170.
- Laitner, J. and H. Ohlsson(2001), "Bequest motives : A comparison of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9(1), pp.205~236.
- Lord, W.(1992), "Saving, wealth, and the exchange-bequest motiv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5, pp.743~753.
- Lord, W. and P. Rangazas(1991), "Savings and wealth in models with altruistic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81, pp.289~296.
- Modigliani, F.(1988),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life-cycle savings in the accumulation of weal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 pp.15~40.
- Perozek, M.(1998), "A Re-examination of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2), pp.423~436.
- Piketty, T.(2011), "On the long-run evolution of inheritance : France 1820-201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6(3), pp.1071~1131.
- Piketty, T., P. Gilles, and J. Rosenthal(2014), "Inherited vs self-made wealth : Theory & evidence from a rentier society(Paris 1872-1927),"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51(C), pp.21~40.
- Stiglitz, J.(1969), "Distribution of Wealth among individuals," *Econometrica* 37(3), pp.382~397.

- Tomes, N. (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5), pp.928~958.
- Wolff, E.(1997), "Wealth accumulation by age group in the US, 1962-1992: The role of savings, capital gains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New York University, mimeo.

◆ 執筆者

- 흥민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발행연월일 | 2017년 12월 26일 인쇄
2017년 12월 29일 발행
- 발행인 | 김 승 택 원장직무대행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9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가 6,000원

ISBN 979-11-260-0157-6